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336-0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2020. 12. 0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02.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계 홍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창호 (한국법제연구원 직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제2장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한 법리적 검토	9
제1절 농업법인 현황 및 제도 개요	9
1. 농업법인 현황 및 법적 근거	9
2.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안) 검토 범위	11
제2절 설립 전 사전심사 및 사전등록제 도입	13
1.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한 관련 법률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13
제3절 농업법인 모니터링 강화	23
1. 일정 규모 이상 농업법인 사업 운영 현황 보고 의무 부과	23
2.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부과	25
제4절 농업법인의 출자·조직 변경에 대한 관리 및 요건 강화	37
1.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전환시 요건 강화 및 법원의 인가요건 도입	37
2. 현물출자시 공인감정서 첨부 의무 부과	46
제5절 장기 미운영 법인 정비를 위한 해산 간주 규정 도입	48
1. 휴면 농업법인의 신고 및 해산 간주 규정 도입	48

제6절 법인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52
1. 목적 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제도 및 신고제도, 공표제도 도입	
52	
2.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 도입	59
3. 실태조사 주기 및 방식 변경	62
제3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67
제1절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 확대	67
1.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조정 가능성	67
제2절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 분류체계 개선 및	
법령간 정합성 확보	68
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간 업무범위의 불일치와 규정 간 체계 정합성 확보	
필요성	68
2.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제한적·열거적 규정 방식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한	
확대	71
제4장 농업법인 관리를 위한 수시 점검 체계 강화 방안	155
제1절 후속조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매뉴얼 보완	155
1.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관련법상 조치 현황	155
제2절 법인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후속조치 내역 및 결과 공지	156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156
2. 입법례 등	157
3. 개선 방향	158
제5장 농업법인 관리체계화를 위한 법제 도입 방안	161
제1절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	162
1. 설립 전 사전심사 및 사전등록제 도입	162

2. 운영·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 정상화 제고 방안	165
3. 출자·조직 변경 요건 강화	166
4. 해산 간주 규정 도입	167
5.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방안	169
제2절 사업범위 조정 및 수시점검 체계 구축	173
1. 목적사업의 범위 확대	173
2. 수시점검 체계 구축	175
참고문헌	179
부 록	18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가

○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인 수, 규모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농지법」과 농업 관련 법제에 따라 농업인 등은 목적 외 사업 영위나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나 농지 불법 취득과 매매 등 다양한 농업법인 관련 제도 악용사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법인 수 : ('00) 3.4천개소 → ('08) 4.5천개소 → ('18) 21.8천개소
매출 10억 원 이상 법인 수 : ('00) 332개소 → ('08) 1,030 → ('18) 6,150개소
근로자 수 : ('00) 23.6천명 → ('08)24.1 → ('18) 106.2천명

- 사실상 장기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농업법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등 농업법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함.

* 2018년 기준, 등기 법인 66만9천개 농업법인 중 3만개소만 실제 운영 중

(2)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과 관련 법령간 체계정합성 검토 필요

-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융복합화 및 새로운 유형의 사업의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들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관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 관련 단체의 출현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함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각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한 각 규정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교육·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스마트팜 기계 제작 및 유통·관리, 사회적기업 방식의 농업 생산자단체 운영 등 사업의 다각화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및 관련 법령 간 규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1)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범위 조정 및 법률 체계성 확보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범위 확대 요구에 따른 관련 법령 분석 및 정합성을 검토하고, 타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태양광사업, 교육컨설팅업무, 스마트팜 기계 제작 등 다양한 업종을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농업법인과 사회적기업과의 법률 적합성 검토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대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과 준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농업법인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농업법인의 성장 지원 및 체계적인 법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법 개정을 위한 조문별 시안을 제시함

문제점	제도 개선 방향(안)
<p>법령위반</p>	<p>① 사전등록제* 도입 ⇒ 설립단계부터 지자체의 법인관리 강화 * 설립요건, 사업범위 적정성 등에 대한 지자체 사전 검토(등록) 후 법원에 설립등기</p> <p>②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도입 ⇒ 위법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 위법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로 확정까지 긴 시간(약 6개월)이 소요되는 해산 명령 청구를 보완</p> <p>③ 실태조사 주기 개선* ⇒ 법인관리의 지속성 확보 * 현행 3년 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 주기 비율조사로 개편</p>
<p>농지·보조금 관리</p>	<p>④ 일정 규모 이상 농지보유·보조금 수혜 법인에 사업 운영현황 보고 및 경영공시 의무 부과 ⇒ 농업법인의 혜택을 받은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p> <p>⑤ 재정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 수령 후 목적 외 사업 영위 시 보조금 환수 규정 마련 ⇒ 농업법인의 혜택을 받은 법인의 비정상 운영 방지</p>
<p>장기 미운영 법인</p>	<p>⑥ 해산간주제* 도입 ⇒ 장기 미운영법인 정리 * 일정기간 영업활동이 없는 법인에 대해 법원에 영업활동을 신고 할 것을 공고하고, 일정기간 내 미신고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상법 제520조의2)</p> <p>⑦ 출자 및 조직변경 규정 개선* ⇒ 방치된 법인을 이용한 범죄 방지 * 현물출자 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첨부하고 조직변경 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p>
<p>후속조치 저조</p>	<p>⑧ 후속 조치 매뉴얼 보완*, 법인관리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 상황 수시점검 체계 마련 * '16년 후속조치 시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취합하여 매뉴얼 보완 ** 지자체의 후속조치 내역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시스템 개선</p>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농업법인 관리 단계별 개선 방향 및 사업범위 조정, 수시점검체계 마련

○ 농업법인의 성장 지원 및 체계적인 법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법령 위반 / 농지·보조금 관리 / 장기 미운영 법인 / 후속조치 상황 수시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① 사전등록제 도입을 통하여 설립단계부터 지자체의 법인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②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제도 도입을 통하여 위법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제제로 확정까지긴 시간(약 6개월)이 소요되는 해산명령 청구를 보완하도록 하며, ③ 법인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 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 주기 비율조사로 개편하도록 함

- 농지·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④ 일정 규모 이상 농지보유·보조금 수혜 법인에 사업 운영 현황 보고 및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농업법인 혜택을 받은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⑤ 재정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 수령 후 목적 외 사업영위 시 보조금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의 혜택을 받은 법인의 비정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함

- 장기 미운영 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⑥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장기 미운영법인을 정리하고, ⑦ 출자 및 조직변경 규정을 개선하여 방치된 법인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첨부하고 조직변경 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

- 후속조치 저조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⑧ 후속 조치시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취합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후속조치 내역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법인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 상황 수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2)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법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성장 지원 및 체계적인 법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법인 관리단계별 개선방향 및 사업범위 조정, 수시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정합성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제시하도록 함

목적	유형	개선방향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	설립	○ 농업법인의 설립 전 사전심사 요건의 채택 및 사전등록제 도입 - 설립요건, 사업범위 적정성 등에 대한 지자체 사전 검토(등록) 후 법원에 설립등기함으로써 농업법인 성립
	운영	○ 농업법인 모니터링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농지보유·보조금 수혜 법인에 사업 운영 현황 보고 및 경영공시 의무 부과 ○ 농업법인의 비정상 운영 방지 : 「재정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수령 후 목적 외 사업 영위 시 보조금 환수 규정 마련
	출자·조직 변경	○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전환시 요건 강화 ○ 방지된 법인을 이용한 범죄 방지 - 현물출자 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조직변경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신설
	해산	○ 방지된 장기 미운영 법인의 정비를 위한 해산 간주규정 채택
	관리·감독	○ 법인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제도 도입 - 현행 3년 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 주기 비율조사로 개편
사업범위 조정	목적 사업	○ 농업 목적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 및 법령 간 정합성 확보
수시점검 체계	후속조치 매뉴얼	○ 후속조치 시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취합하여 매뉴얼 보완
	법인관리시스템	○ 지자체의 후속조치 내역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시스템 개선

2. 연구의 방법

(1) 전문가 및 자료의 즉시적·효율적 활용

- **(전문가의 즉시적 활용)** 이 연구의 공동연구진 외에 다년간 법제 실무경력을 보유한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의 다양한 입법전문가(박사 약 60명) 및 연구네트워크에 기초한 외부전문가를 상시적·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연구내용의 즉시성·충실성을 도모하고, 연구성과의 정책적 반영도를 제고함.
- **(참고자료 즉시적 활용)** RFID(Radio R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을 구비한 체계화된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료실(장서 34,059권, 정기간행물 215종 등)을 즉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즉시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자문위원단의 구성 및 활용

- **(자문위원단의 구성)** 이 연구의 법리적·입법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법제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10명 내외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
- **(자문위원단의 활용)** 이와 같이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함으로써, 제도개선안의 법리적 타당성 및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을 강화함.

(3) 유기적 협력관계의 충분한 활용

- **(유기적 협력관계)**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8년간 다수의 국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으며,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관계를 활용함.
- **(협력관계의 활용)** 지금까지 축적된 국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입법추진의 수월성 및 입법례 조사·분석의 다양성을 확보함.

(4)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조사자료 수집 및 분석

-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발주처와 각 쟁점별 개선방향에 대하여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제시함

- **(선행 연구결과 및 자료 활용)** 선행 연구결과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및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대상 법령을 특정하고,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제도별 쟁점과 개정안을 도출하도록 함

(5) 구체적 입법시안의 제시

- 농업법인의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유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실무적·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방향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구체적인 조문별 법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신규조문 대비 및 조문별 개정안 해설을 추가하여 개정안의 제출 및 향후 법 개정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농업법인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설립단계에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 조직변경 및 출자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해산단계에서 비활동법인에 대한 해산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적시의 관리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영업정지명령 제도를 채택하는 등 관리·감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행정상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실무계의 수요를 반영한 확장 여부와 사업범위 외 업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각 사업별 근거법률에 기반하여 검토함으로써, 향후 4차산업혁명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 2 장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한 법리적 검토

제1절 농업법인 현황 및 제도 개요

1. 농업법인 현황 및 법적 근거

-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농조합법인(제16조)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농업회사법인(제19조)은 “기업적 경영체”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
- 설립 주체 :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을 주축으로 설립 가능
 - (설립)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 한도
 - * 단, 총출자액이 80억원 초과 시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 가능
 - (의결권)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으로 결정
-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 농지소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법인 주요 세제 지원

구분		세제지원 내용
국 세	법인세 (2021.12.31까지) ※조특법 §66, 68, 영 §63~65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면제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 이하의 소득분 -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 ③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출자 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 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 축산업, 임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부가가치세 (2021.12.31까지) ※조특법§105, §106	①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②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④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지 방 세	취득세 (2023.12.31까지) ※지특법 §11, 보칙 제177조의2	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②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2020.12.31까지) ※지특법 §11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
	재산세 (2023.12.31까지) ※지특법 §11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조합원 / 농업인	양도소득세 (2021.12.31까지) ※조특법§66, 6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배당소득세	①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소득세 면제

	(2021.12.31까지) ※조특법§66, 68	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면제, 초과하는 금액은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	-------------------------------	---

2.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안) 검토 범위

- 제2절 이하에서는 농업법인의 성장 지원 및 체계적인 법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법령위반 / 농지·보조금 관리 / 장기 미운영 법인 / 후속조치 상황 수시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① 사전 설립신고제 도입을 통하여 설립단계부터 지자체의 법인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②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제도 도입을 통하여 위법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제제로 확정까지인 시간(약 6개월)이 소요되는 해산명령 청구를 보완하도록 하며, ③ 법인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 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 주기 비율조사로 개편하도록 함
- 농지·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④ 일정 규모 이상 농지보유·보조금 수혜 법인에 사업 운영 현황 보고 및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농업법인 혜택을 받은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⑤ 재정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 수령 후 목적 외 사업영위 시 보조금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의 혜택을 받은 법인의 비정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함
- 장기 미운영 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⑥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장기 미운영법인을 정리하고, ⑦ 출자 및 조직변경 규정을 개선하여 방치된 법인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첨부하고 조직변경 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
- 후속조치 저조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안)으로서 ⑧ 후속 조치시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취합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후속조치 내역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법인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 상황 수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2)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법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성장 지원 및 체계적인 법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법인 관리단계별 개선방향 및 사업범위 조정, 수시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정합성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제시하도록 함

목적	유형	개선방향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	설립	○ 농업법인의 설립 전 사전심사 요건의 채택 및 사전신고제 도입 - 설립요건, 사업범위 적정성 등에 대한 지자체 사전 검토(등록) 후 법원에 설립등기함으로써 농업법인 성립
	운영	○ 농업법인 모니터링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농지보유·보조금 수혜 법인에 사업 운영 현황 보고 및 경영공시 의무 부과 ○ 농업법인의 비정상 운영 방지 : 「재정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수령 후 목적 외 사업 영위 시 보조금 환수 규정 마련
	출자·조직 변경	○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전환시 요건 강화 ○ 방치된 법인을 이용한 범죄 방지 - 현물출자 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조직변경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신설
	해산	○ 방치된 장기 미운영 법인의 정비를 위한 해산 간주규정 채택
	관리·감독	○ 법인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제도 도입 - 현행 3년 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 주기 비율조사로 개편
사업범위 조정	목적 사업	○ 농업 목적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 및 법령 간 정합성 확보
수시점검 체계	후속조치 매뉴얼	○ 후속조치 시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취합하여 매뉴얼 보완
	법인관리시스템	○ 지자체의 후속조치 내역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시스템 개선

-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각 제도별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대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5장에서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설립 전 사전심사 및 사전신고제 도입

1.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한 관련 법률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1) 설립 전 사전심사 제도 도입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황

- 설립등기를 통하여 성립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설립등기 후, 설립·변경 등기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가질 뿐임
- 설립통지제를 운영 중이나 설립주체와 설립요건 판단 등 관리주체(지자체)가 다르고 양자 간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법원에서 지자체에 직접 설립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법원 행정상 어려움이 있음

○ 현행 규정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한 형식적인 확인이 가능하나, 실질심사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 출자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조건 외에는 현행 법률상 별도의 사전심사 기능이 없는 상태임.

○ 문제점

- 설립통지 미이행시 관리주체가 지자체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관(농정원) 내지 법원등기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이러한 설립·변경 등기(법원) 후 설립·변경 신고(지자체)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 등 관리체제 분화는 농업법인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 '15년부터 설립통지제를 운영 중이나 등기 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미통지 여부 적발이 어려워 목적 외 사업 등 설립요건 위반 상태가 지속
- * 농업법인이 설립·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설립·변경 등기 사실 통지해야하며 미통지 시 과태료 부과
- * 설립·변경 통지 후 지자체에서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시정요구 시 변경등기 비용 등 법인의 부담 발생

2) 입법례 등

- 입법례 검토 이유 : 다른 법률에서 설립에 대한 요건 강화 규정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입법례들을 검토하여, 농업법인의 설립조건 사전심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소관 법률)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하고(제16조, 제71조), 관할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설립등기신청서에 설립신고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제61조, 제84조) 설립신고를 사실상 인가제의 효과를 가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68조·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설립인가(제85조, 제114조, 제115조의2) 제도를 도입하고,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 미개시의 경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부정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의 취소’ 규정이 적용됨

「협동조합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2020. 3. 31., 2020. 6. 9.>

- 1. 21., 2016. 3. 2., 2020. 3. 31., 2020. 6.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제8절 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2020. 3. 31., 2020. 6.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 1. 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 3. 31.>

제1절 설립 <신설 2020. 3. 31.>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신설 2020. 3. 31.>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3) 개선방향

○ 유사 단체의 설립과 등기에 관한 제도 운영 현황 및 근거 법률의 참고

- 가장 기초적인 법정조합단체로서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신고허가증이 발급되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기재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함으로써 성립됨
- 다음 [표]는 농업법인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별 설립 및 등기 제도 운영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표] 농업법인 유사 단체의 설립 및 등기 제도 운영 현황 비교

근거 법률	종류	소관부처	법인격	설립			등기	
				창립 총회	신고 (수리 요)	인 가	설립 등기	변경 등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획 재정부	○	○	○	x	○	지사무소 설치/이전/변경/합병/해산/계 속/청산인/청산종결/조직변경
	협동조합 연합회		○	○	○	x	○	지사무소설치/이전/변경 /합병/해산
	이종협동 조합연합회		○	○	○	x	○	지사무소설치/이전/변경/해 산/청산인/청산종결
	사회적 협동조합		○	○	x	○	○	지사무소설치/이전/변경/계 속/합병/해산/조직변경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	○	x	○	○	지사무소설치/이전/변경/해 산/청산인/청산종결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공정거래 위원회	○ (비영 리)	○	x	○	○	변경/해산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벤처부	○	○	x	○	○	해산/합병
	중소기업 사업협동조 합		○	○	x	○	○	해산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	○	x	○	○	해산
	중소기업 중앙회		○	○	x	○	○	해산
농업협동 조합법	농업협동조 합	농림축산 식품부	○	○	x	○	○	지사무소 설치/이전/변경/합병/조직변 경/해산/청산인/청산종결
수산업협 동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해양 수산부	○	○	x	○	○	변경
	수산물가공 수산업		○	○	x	○	○	변경/합병/해산/청산인/청산 종결

제 2 장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한 법리적 검토

근거 법률	종류	소관부처	법인격	설 립			등 기	
				창립 총회	신고 (수리 요)	인 가	설립 등기	변경 등
	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	○	x	○	○	변경/합병/해산/청산인/청산 종결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	○	x	○	○	변경/합병/해산/청산인/청산 종결
	조합 공동사업법 인		○	○	x	○	○	변경/합병/해산/청산인/청산 종결
	수산업협동 조합협의회		x	x	x	x	x	x
의약품 물류협동 조합법	의약품물류 협동조합	보건 복지부	○ (비영 리)	○	○	x	○	합병
업연초 생산협동 조합법	업연초생산 협동조합	기획 재정부	○	○	x	○	○	변경
신용협동 조합법	신용 협동조합	금융 위원회	○	○	x	○	○	변경/해산/계약이전/경영관 리의 통지/청산종결
사회적기 업법	사회적기업	고용 노동부	-	x	x	인 증	○	
공익법인 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법무부	○	○	x	○ 설 립 허 가	-	-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 복지법인	보건 복지부	○ 공익 법인 준용	○ 공익 법인 준용	x	○ 설 립 허 가 (시	○	-

근거 법률	종류	소관부처	법인격	설립			등기	
				창립 총회	신고 (수리 요)	인 가	설립 등기	변경 등
						도 지 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행정 안전부	-	-	등록 (수리 요)	x (중 양/ 시 도 지 사)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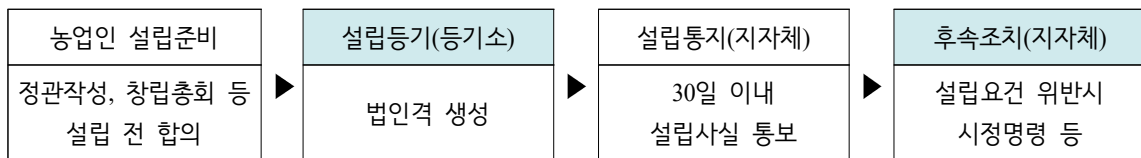
○ 개선방향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16조, 19조 개정을 통하여 설립통지제를 설립 등기전 설립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관리주체의 통일을 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개념: 법원 등기소에 농업법인 설립 등기 전(前) 법인설립요건, 사업범위 적정성, 농지소유 적격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등록) 후(後) 등기

* 절차: 지자체에 설립신고 후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현행: 등기 후 통지)



(개선 방향)



* 기대효과: 위법하게 설립되는 농업법인의 사례를 최소화하고, 사업범위 등의 요건을 사전 확인하여 별도의 변경등기 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 경감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에서 관리하여 향후 지자체 담당자의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가 용이함

* 이미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휴면법인에 대하여서는 해산간주제를 채택함으로써 미운영 법인을 정리하도록 연계함

제3절 농업법인 모니터링 강화

1. 일정 규모 이상 농업법인 사업 운영 현황 보고 의무 부과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행 규정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영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법인의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집계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업법인의 경영이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업법인 설립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본의 침탈 또는 지분구조의 변화는 없는지,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은 없는지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음

(2) 입법례 등

- 가장 기초적인 법정조합단체인 농업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합 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여러 행위들을 사전에 공개함(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9항)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그 정관에서 정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해야 함(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p>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⑨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생략)</p>
<p>제65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p>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적극 공개하여야 함(같은 법 제49조 제1항).
-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같은 법 제119조 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
<p>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 최근 국회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에서는 사회

적 경제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안)
<p>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p> <p>제3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 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p> <p>제4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3) 개선 방향

- 운영공개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정관, 규약 등 농업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회계장부, 그 밖에 농업법인의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 법인 소재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통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나 목적외 사업의 영위, 자본의 침탈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2.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부과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행 규정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 수급 농업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서도 경영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집계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자본의 침탈이나 지분구조의 변화,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2) 입법례 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의2에서는 경영공시 의무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 즉,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나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에게는 사업결산 보고서, 사업(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공시 의무가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p>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p>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p>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p>

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 최근 국회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공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안)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안)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p>제3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3) 개선 방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 농업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사업결산보고서, 농지 소유·수익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통합 공시를 위한 자료의 등록과 변경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농업법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제3자 신고나 실태조사 수행 결과에 따라 특정 농업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상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법인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이러한 운영의 공개, 경영공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 영업정지대체 과징금의 부과, 해산명령의 청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입법 기준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징금 입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과징금 입법 기준¹⁾

- 현행법상 과징금의 개념과 부과 목적
-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
-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1)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2)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3)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유형으로 구분됨
-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과징금의 유형

○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불법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추징 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임
-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임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은 허가처분 등 수익적(授益的)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수단으로서 영업자가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로서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하나, 이로 인하여 그 영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공익적 고려에 따라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에까지 금전적 제재로의 대체(代替)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서까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허용해서는 안 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의 영업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경우의 영업이익 환수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지 영업이익 환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음

○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 금전적 제재 과징금은 그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얻게 된 이익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처분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는 다름
-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일정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과태료의 경우 대개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현저히 큰 금액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적용됨

□ 과징금 제도 도입 시 유의 사항

- 과징금의 부과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리상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과징금 제도 관련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아울러 법률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는 부과권자, 부과사유, 상한액, 부과금액 산출기준, 체납 시의 강제징수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14조 제1항~제3항에 근거 및 위임입법 사항 규정)
 - * 위임입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률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입법은,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금전제재와 중복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제재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해야 함
 - 과징금 부과사유가 형벌의 구성요건이나 과태료 부과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처벌로 비취질 소지를 없애는 데 유의하되,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하여야 함
 -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입법례도 있으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상 과징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도입되고 있고, 그 도입 목적이나 규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유형의 입법례가 가장 많이 채택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도입 기준

-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 도시가스사업, 해운업, 항공업, 항만운송사업, 석유사업, 도소매업, 유선방송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음
- 그러나 차츰 자동차관리업, 건설업, 식품위생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는 사업에까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왔는데, 이는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어 행정청이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점을 해결 하고 행정청도 과징금 수입을 특정한 행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임
-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를 공익성이 약한 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면 영업정지처분이 갖던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게 됨
-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이용자의 편의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규정 방식

○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

-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은 법률에 두되, 취소·정지 규정은 하나의 조문(또는 항)에 서 함께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취

소·정지 규정과는 다른 조문(또는 항)에서 별도로 규정함

- 과징금 부과 요건에 영업정지사유 외에 공익성에 관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앞에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와 같은 공익성 요건 관련 표현을 두도록 함
- 과징금액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매출액·비용 등과 연계하려면 “○○원 이하”라는 표현 대신에 “……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
- [입법 모델]

제○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호, 제○호 또는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한다.

제○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권자는 제○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의 부과 기준

- 과징금 부과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살려 과징금부과사유를 영업정지사유와 연계함
- 영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데 반해, 과징금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같은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면 과징금의 부과금액도 가중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지는 공익성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할 재량 사항이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적용할 과징금 금액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취지를 벗어나므로 위의 입법 모델에 따른 법률 규정하에서 대통령령으로 과징금 부과사유를 정할 때에는 정지처분사유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일치시키도록 함
- 영업정지사유의 일부분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하려면 법률 단계에서 과징금 부과 제외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사유 또는 부과 제외사유를 법률에서 확정할 수 없고 하위법령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에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를 두어 그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
- [입법례]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사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 [입법례] 과징금 부과 제외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을 주로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세부 기준은 동일한 법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과징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소관 부처가 단독으로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됨
-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은 총리령이나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부과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연관된 부과 기준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개정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함
- 한편 과징금의 가중·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함께 규정하며,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액은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입법례]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 영업정지기간과 매출금액 등을 반영한 과징금 산정방식 규정

-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거나 사업규모나 업체별 매출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과징금 액수 자체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과징금 부과 제재 효과가 없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대통령령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에는 영업정지기간, 매출금액,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입법 모델]

【법률】 제○조(과징금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사용정지, 업무정지)기간에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영업정지(사용정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조(또는 별표 ○)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천만원(법률상 상한금액)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 이하	○○ 원
2	○○ 초과 ~ ○○ 이하	○○ 원
.	.	.
.	.	.

	○○ 초과	○○ 원
<p>○과징금의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청문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의신청이나 청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반복하는 것과 연계시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행강제금 등과 비교하여 일반적 해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 <p>- [입법모델]</p>		
<p>【대통령령】 제○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부과권자가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부령】 제○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각각 별지 제○호서식 및 별지 제○호서식에 따른다.</p> <p>○ 납부기한의 연장과 과징금의 분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종전 입법례에서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했으나, 처분의 성격이 금전납부의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분성(可分性)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 할 필요는 없음 -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함 <p>[입법례]</p>		
은행법		
<p>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증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p> <p>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p>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징수

-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고금 관리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면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독촉절차에 관한 규정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달리 정하려는 때에만 별도 규정을 두도록 함
- 또한,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과 납입고지서에 이의 제기 방법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지 않음
- 과징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징금 미납과 가산금

-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음
- 과징금 미납 시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함
-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임
- 과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일반적 강제징수에 의하도록 할 수밖에 없음

○ 과징금의 귀속과 강제징수

- 과징금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도록 함
- [입법 모델]

③ 제○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특별회계(또는 ○○기금)에 귀속된다.

- 강제징수 규정은 법률에 두되, 징수 주체가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 [입법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 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 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제8호의3·제9호·제9호의 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의 용도

-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음
 - 부득이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징금의 무계획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도 검토하도록 함
- [입법례] 과징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

철도사업법

제17조(과징금처분)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 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용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 법제지식 - 입법 기준/편람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제 규정 - 10. 과징금 (<https://www.lawmaking.go.kr/lmKnlng/jdgStd/info?astSeq=2232&astClsCd=CF010120200601> 최종검색)

제4절 농업법인의 출자·조직 변경에 대한 관리 및 요건 강화

1.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전환시 요건 강화 및 법원의 인가요건 도입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황

-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며, 농업회사법인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로 설립이 가능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범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일정부분 차이점이 있으며, 주식회사가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시 상법 제60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요하지 않음
- 다음의 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주체 등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주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 결원 시, 1년이내에 충원(미충원 시 해산 사유)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한도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농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법인 수 : 10,163개 ○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 1,198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2,219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21백만원 * 출처: 2018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법인 수 : 11,617개 ○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 2,356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3,931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349백만원 * 출처: 2018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0.2월)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 법인세의 경우 ①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 ②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은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이하의 소득분(영농조합법인), 연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농업회사법인)까지 감면 ③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원(영농조합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농업회사법인) 감면 ○ (지방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법인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 현행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회사법상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p>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p>[전문개정 2012. 5. 22.]</p>

- 주식회사 형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 절차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농업회사법인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함.

- 「상법」에서는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고 하며,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법원의 인가, 채권자 이의절차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²⁾

* 다만,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은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고, 최저자본금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문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그 설립 요건 자체는 극도로 완화되어 있음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100문100답 - 사업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http://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seq=4185&onhunqnaAstSeq=83&targetRow=8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 2020.7.22. 최종검색)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상법」
<p>제232조(채권자의 이익)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익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p> <p>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익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p> <p>③이익을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p>
<p>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p> <p>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20]</p>
<p>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p> <p>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p>
<p>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p> <p>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p> <p>③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p>
<p>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p> <p>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601조(물상대위)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p> <p>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p>
<p>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p> <p>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p>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料)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 주식회사가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상법 제60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 「상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간 규제 공백으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한 상황임

○ 문제점

- 자본이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구매 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기 행위에 사용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음³⁾

3) 한겨레 뉴스기사, “자본잠식 영농법인 우량회사로 둔갑시켜 155억 뜯은 일당 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861.html)

* 한겨레, 2020년 3월 3일자 뉴스기사

“(생략) 씨는 지난해 3월 출자금이 완전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 5천만원에 사들인 뒤 씨, 씨와 함께 법원 등기소에 이 법인이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후 이 법인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신청해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법원 등기소가 주식회사를 최초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조직변경을 하면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생략)- ”

*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출자방식 및 조직변경 시의 허점이 원인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때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 유한회사 등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보다 쉬운 것을 악용한 사건임

(2) 입법례 등

- 주식회사 형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 절차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농업회사법인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함.

- 「상법」에서는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고 하며,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법원의 인가, 채권자 이의절차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⁴⁾

* 다만,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은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고, 최저자본금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문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그 설립 요건 자체는 극도로 완화되어 있음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100문100답 - 사업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http://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4185&onhunqnaAstSeq=83&targetRow=8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 2020.7.22. 최종검색)

「상법」
<p>제232조(채권자의 이익)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익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p> <p>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익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p> <p>③이익을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p>
<p>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p> <p>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목개정 2014.5.20]</p>
<p>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p> <p>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p>
<p>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p> <p>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p> <p>③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p>
<p>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p> <p>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601조(물상대위)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p> <p>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p>
<p>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p> <p>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p>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직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 협동조합 기본법

- *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에서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출자금총액 및 적립금, 관계 행정기관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 인허가 취득, 조직변경의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 특히, 회사형태 외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도 조직변경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

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⑧ 시·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3) 개선 방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내지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상법상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인가 없이는 조직변경의 효력이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의 인가 규정 예시: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현물출자시 공인감정서 첨부 의무 부과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황

- 영농조합법인에게는 출자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표 조합원이 출자자산의 지목, 면적 등만 제출하고 가치평가는 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됨

○ 현행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처럼 완화된 규정에 따라 대표 조합원이 출자자산의 지목, 면적 등만 제출하고 가치평가는 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 이를 악용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자산가치를 부풀려 등기하고, 이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자본금이 풍부한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2) 입법례 등

「상법」
<p>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3) 개선 방향

○ 현물출자 가치검증·조직변경 시 법원 인가 조항 신설

- 현물출자 시 출자한 자산의 가치에 대한 증명 규정을 신설하고, 현물출자 시 등기소에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출자금 부풀리기를 방지하여야 함

제5절 장기 미운영 법인 정비를 위한 해산 간주 규정 도입

1. 휴면 농업법인의 신고 및 해산 간주 규정 도입

(1) 현행규정 및 문제점

○ 농업법인의 해산명령 관련 절차

- 해산명령청구에 의한 농업법인의 해산절차(현행)

절차	내용	주체	근거법률
사전통지, 의견청취	해산명령 청구 통지 및 의견청취	지자체→ 법인	행정절차법 §21
↓			
해산명령 청구	해산명령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	지자체→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조의3
↓			
관보 공고	해산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관보 공고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92
↓			
의견청취	이해관계인과 감사의 의견 청취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90
↓			
해산을 명하는 재판	회사, 이해관계인, 감사는 해산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집행정지)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91
↓			
해산명령	이유를 붙인 결정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90
↓			
등기촉탁	해산재판 확정시 본점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 촉탁(우편 가능)	법원→ 등기소	비송사건절차법 §93 비송사건절차법 §108 상업등기법 §24
↓			
청산인 선임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 선임, 보수액은 법원이 정하고 회사가 지급(즉시항고 가능)	법원	상법 §252 비송사건절차법 §77
↓			
청산인 등기	업무 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산인	상법 §253 상법 §635
↓			
청산 실시	업무 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산인	상법 §635
↓			
청산종결	업무 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산인	상법 §264 상법 §635

○ 현행 제도 현황 및 장기미운영 농업법인 관리 체계 확보의 필요성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영농조합법인 구성 기준은 농업인 조합원 5인 이상이고, ②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은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1년 이상 시정명령 대상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의 청구가 가능함
- 한편, 목적외 사업 영위 또는 시정명령 3회이상 불응, 1년이상 장기 휴업의 경우에도 해산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고,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1/3이상이 농업인일 것 등 농지소유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시정명령 2회이상 불응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실태조사에 불응시에도 최대300만원의 과태료,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이처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1년이상 장기휴업의 경우를 포함하여 일정한 경우에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해산명령) 제1항에서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근거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농업법인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해산명령 외에도 임시휴업, 폐업, 소재불명 등 장기 미운영 농업법인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와 같이 등기 후 미운영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업 계속의 신고를 하도록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입법례 등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는登記 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사업 계속의 신고를 하도록 공고하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상법」
<p>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p>

-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에서도 2020년 3월의 개정을 통하여, 상법 제520조의2와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즉,登記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계속의 신고를 하도록 공고하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p>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p>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p>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3. 31.]

(3) 개선방향

- 최근 농업법인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방치된 장기 미운영 법인이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 미운영 법인에 대하여서는 해산 간주규정 채택이 필요함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휴면회사의 해산제도와 같이, 설립 후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영업활동이 없는 법인에 대해 법원에 영업활동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고, 일정기간(2개월) 미신고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해산 간주 제도를 채택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장기 휴면 농업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해산명령, 실태조사 등) 소모를 방지하고,
 - 상법에서는 휴면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 간주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실유명회사들을 정리하여 거래안전보호,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농업법인은 협동조합과 달리 등기번호로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해산간주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 법원행정처에 정보 송부 전 지자체에 법인 정보를 제공하여 재확인하도록 하여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산 간주 후에는 농관원에 결과 통보하여 경영체등록 말소 작업을 진행하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 조합원·주주의 회사계속 결의로 운영 재개는 가능하도록 함

제6절 법인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 법인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제도 도입
 - 현행 3년 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 주기 비율조사로 개편

1. 목적 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제도 및 신고제도, 공표제도 도입

(1) 현행규정 및 문제점

○ 현황

- 후속 행정조치 대상 건수는 2.4만여건으로 2016년 대비 6천여건 증가하였으며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된 법인이 크게 증가하였음
-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1,880개소에서 2,96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16년과 2019년 모두 부동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법인설립요건 미충족 또는 목적외 사업 운영 법인 등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법인수	목적외 사업 영위에 대한 해산명령청구 건수
계	2,968
영농법인	1,282
회사법인	1,686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소유 위반 등 법인⁵⁾을 '농지이용실태조사(특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농지처분 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예정임

5) 농지소유요건 위반(1/3이상 농업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재배실적, 매출실적이 없는 농업법인 등

○ 현행 규정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는 사업 범위 위반에 대한 해산명령청구 외에는 영업정지명령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신고 규정 등의 제도가 운용되지 않고 있음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설립절차는 설립 등기 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법인의 설립과 관리가 등기소 등기 및 농정원 등록, 지자체 실태조사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음.

위반 및 관련 사항	조치	근거법령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 시정명령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조2 ⑤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이 된지 1년 경과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사업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 해산명령청구 (지자체 → 법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조3 ①, ② 상법 §176 ①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최대 300만원) 실태조사 불응(최대 300만원) * 농지소유 여부 거짓 응답 포함 설립통지, 변경통지 미이행(최대 100만원) * 단, '15년 7.7. 이후 설립·변경등기한 법인에 한함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최대 100만원)	▶ 과태료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 §33 ①, ②
5년간 등기사항 미변동시 관보 공고	▶ 해산간주	상법 §520조의2 ① 상업등기법 §73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이상이 농업인) 위반 후 3개월 경과 * 미이행시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처분명령 (지자체 → 법인)	농지법 §10 ① 농지법 §11 ① 농지법 §62 ①

○ 문제점

- 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 부실 영농조합법인 구매 후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여 농지 취득 후 부동산 중개업 등 목적외 사업을 영위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 농지 취득 후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개발·매매 등의 사업(주택임대사업, 부동산중개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범위반 법인에 대하여서는 2015년 10월~11월의 감사원 농업법인 실질감사 결과 연간 경지(재배)면적이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한 법인이 1,344개소(8,600ha)이고, 그 중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등기한 법인이 60개소(77ha)에 이르기도 하였음
- 따라서, 목적사업 범위를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확대하는 한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균형감있는 규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입법례 등

-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의2(감독)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규정을 채택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1조(감독) 등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고의무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검사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p>제2장 협동조합</p> <p>제8절 감독 <신설 2020. 3. 31.></p> <p>제70조의2(감독)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본조신설 2020. 3. 31.]</p>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감독 규정 없음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5조(준용규정)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

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 3. 31.>

제8절 감독 <신설 2020. 3. 31.>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p>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3) 개선 방향

- 현행의 3년주기 전수조사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제도를 3년주기 비율조사(1년에 1/3씩 조사하고, 신규등록법인에 등록된 다음해부터 3년주기로 조사하는 방식) 로 변경하여, 실태조사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태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목적외 사업을 영

위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한 목적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의 발견 및 적기 조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목적 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해산명령 및 영업정지명령 처분과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및 처분 결과가 확정된 경우,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선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 도입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행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5. 1. 6.]</p>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p>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 재정사업관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20. 2. 2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52호, 2020. 2. 27., 일부개정]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p>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p>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p>

○ 문제점

- 현행의 3년주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를 시행하려는 경우, 2년 이상 환수기회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보조금 수령후 해산하는 농업법인 등에 대한 환수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보조금법」 및 훈령으로 운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입법례 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외에 사용한 때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p>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3) 개선 방향

- 보조금법 제33조의2 내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의 실질적인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그 법적 지위를 법률에 둬으로써 보조금환수 규정의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태조사 제도의 개편 및 신고제도 도입, 공표제도와 연계를 통하여 실질적인 예방적 관리 효과를 확보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각급 지자체의 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라 지급한 각 보조금에 대하여, 농업법인이 법에 따른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실태조사 주기 및 방식 변경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행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u>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 문제점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적시에 정상운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 및 적기 시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입법례 등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 소관 법률) 제6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p>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52호, 2020. 2. 18., 제정]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소관법률) (시행령 미제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소관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p>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평가 방법, 조사·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평가 방법, 조사·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6조(실태조사·평가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p>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어업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개선 방향

○ 법제 개선 방안

- 현행 3년 주기 전수조사 방식의 실태조사 제도를 1년 주기의 비율조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 농업법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즉, 현행 3년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주기 비율조사로 변경하여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함
- 마지막 3년주기 전수조사 결과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된 법인에 대하여서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을 3년주기로 매년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1년주기 비율조사로 변경함
- 직전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설립 농업법인에 대하여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정상운영 중인 농업법인에 대하여서는 차년도부터 3개 그룹에 편입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자체별로 현재 설립된 법인명부 작성하고 사전등록제 도입 후 신규 설립법인은 설립신고 시 명부에 추가하여 명부번호에 따라 그룹 구분
- 조사항목에 고용현황, 재무상황, 정책 수요 등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내지 보조금 수령, 등기사항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담당자가 실태조사 업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수행능력 또한 향상되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지자체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 분담 등 지원방안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실

태조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후속조치를 요청할 경우에 따른 지자체차원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조사주기 단축으로 지속적으로 농업법인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비율조사로 조사 후속조치 시 소요되는 행정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조사항목 추가로 법인의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등 사후적 조치와 향후 정책 및 제도 수립 등에 조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제3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 농업 목적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 및 법령 간 정합성 확보

제1절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 확대

1.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조정 가능성

(1)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령 규정 업종, 신종업종, 민원 문의 다수 발생 업종의 사업범위 포함 여부 검토

○ 현황

- 농업환경 변화에도 사업범위가 조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범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15년 개정)를 제외하면 '95년 이후 사업범위 개정 없음

- 태양광 발전, 컨설팅업, 연구개발, 영농교육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는 경영체들이 존재하나 법상 제약으로 난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을 타 법령에서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 불일치로 혼란 발생

- 태양광사업, 사회적기업, 교육·컨설팅 사업, 스마트팜 기계 및 설비 제조 등에 대하여 목적 사업 범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령상 농업법인이 영위 가능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타 법령에서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업에 대하여 농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이 주사업이 되고 타 법령상의 사업은 부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제약하여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
- * 예) 태양광 발전사업은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에서만 가능

제2절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 분류체계 개선 및 법령간 정합성 확보

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간 업무범위의 불일치와 규정 간 체계 정합성 확보 필요성

- 농업 관련 업종 분류에 따른 중소기업 내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분류체계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간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도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에는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고,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야생 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이 포함되나, 세부 업종에서 임업 외의 분류 기준에 드는 사업범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산림조합법」제2조 제5호에서는 “산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산림자원’은 ‘1)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2)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3)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산림조합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임업’의 정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업’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임업은

	<p><제 외> ·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023)</p>
0202	별목업
02020	<p>별목업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별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 시> · 원목 생산 · 별목업자 · 연료용 나무 생산 · 화목 생산</p>
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p>임산물 채취업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p> <p><예 시> · 천연 김 및 수지 채취 ·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 천연 코르크 채취 ·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p> <p><제 외> ·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40) ·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40) ·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2)</p>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p>임업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별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예 시> · 산불 방지 서비스 ·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별목장 내) ·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p>

- 이처럼 각 법령 간 정의 규정 및 준용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아래의 내용에서 이러한 법령 간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소개하기로 함

2.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제한적·열거적 규정 방식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대한 확대

(1)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논의와 개정 대상 법령 검토

○ 농업법인은 「농지법」과 농업 관련 법제에 따라 사업 범위가 법령에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다양한 사업범위에 대한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정 대상 법령별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 및 농외소득(농업인 소득) 개념 등을 새로운 유형의 사업 범위로 확장하게 되는 경우,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 개념 내지 「농지법」과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소득과 농외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와 정합성 확보도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주체를 ‘농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 농업법인 수는 농업회사법인 중심으로 지속적 증가

○ 농업법인 수: (‘15)18,757→(‘16)19,413→(‘17)21,659→(‘18)21,780

- 영농조합법인: (‘15)12,979→(‘16)12,768→(‘17)13,363→(‘18)10,163

- 농업회사법인: ('15)5,778→('16)6,645→('17)8,296→('18)11,617
□ 총 종사자 수 지속적 증가
○ 총 종사자 수: ('15)115,704→('16)122,265→('17)141,454→('18)149,192
* '18년기준: 상근출자자 43,016명, 상용근로자 59,888명, 일용근로자 등 46,288명
○ 법인당 종사자 수: ('15)6.6→('16)6.8→('17)7.0→('18)6.8
□ 총 매출액 및 법인당 매출액이 지속 증가
○ 총 매출액(십억원): ('15)24,619→('16)25,767→('17)29,549→('18)37,472
○ 법인당 매출액(백만원): ('15)1,408→('16)1,424→('17)1,462→('18)1,813
○ 연매출 10억 이상: ('15)3,647→('16)4,033→('17)4,472→('18)6,150
□ 자본 규모 및 영업이익 증가로 경영상태 개선
○ 자본 10억 이상: ('15)1,444→('16)1,641→('17)1,934→('18)2,610
○ 영업이익 5억 이상: ('15)361→('16)392→('17)496→('18)530
□ 주사업유형이 농업생산인 법인이 가장 많고 유통, 가공 순
○ '18년 기준 주 사업유형(%): 농업생산(32.9) > 유통(30.9) > 가공(20.7) > 기타(11.4)
- 영농조합법인 : 농업생산(36.1) > 유통(26.4) > 가공(19.4) > 기타(18.1)
- 농업회사법인 : 유통(34.8) > 농업생산(30.1) > 가공(21.9) > 기타(13.1)
(유의사항) 2018년 기준부터 「농업법인 조사」 모집단 기준 변경(통계청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시계열 단절

<검토 대상 사업>

○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태양광사업, 사회적기업, 교육·컨설팅 사업
○ (최근 신종업종) 스마트팜 기계(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제작·보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p>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p>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p>농업법인 정관례</p>	<p>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사업 5.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p>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p> <p>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지 다른 법령에서 인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법령명	조항	관련내용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의 80% 이상인 농

법령명	조항 및 변경)	관련내용
		업법인을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농업법인이 정관에 귀농귀촌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고, 상당 컨설팅 업무 수행경험 인력을 3명이상 보유하며 교육시설을 갖춘 경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로 지정될 수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농업법인 등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자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운영 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교육 및 컨설팅 을 하기 위해 농업법인 중 장관이 전문경영체로 지정하여 활용 가능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 하는 법인에 포함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업무 중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등 농림·수산·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사유)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할 수 있음

(2) 목적 사업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법제 정합성 검토

1) 법제 관련 공통 현황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어업경영체법상의 열거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환경 변화에도 사업범위가 조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른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제도 운용과 불일치가 생기기도 함
 - 태양광 발전, 컨설팅업, 연구개발, 영농교육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하여 선도적 농업인으로 활동하려는 농업법인들의 경우 관련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는 경영체들이 늘고 있으며,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으로는 법령상 규정된 사업범위 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임
 -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15년 개정)를 제외하면 '95년 이후 사업범위에 대한 법령 개정이 없었음
 - '농어업경영체법' 상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을 타 법령에서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 불일치로 혼란 발생
 - * 간척지 활용사업, 태양광사업, 사회적기업,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공판장, 화물 운송업, 교육·컨설팅 사업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규정 방식 및 내용이 상이하나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구분이 모호
 - 현행 사업범위 규정의 해석상 주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 바, 농지법 등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농어업경영체법과 하위법령에도 명문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준수 의무와 보고의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협조의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기존에 부대사업만을 영위하다고 하여 위법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정부법무공단 2019.10.)
 -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가 일부 상이하나 사업범위 해석 시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 중
 - * 현재 시행령 11조의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시행령 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규정 방식 재조정 필요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 취지에 따라 사업범위의 규정 방식 및 사업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구분 필요
 - 사업범위 확대 시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주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필요
 - * 예) 농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의사 없이 창고 등 시설물 건축한 후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영위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차단
 - 주된 사업범위 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부대사업의 규모는 주된사업범위와의 비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또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에 따른 ‘농업인의 기준’이나 ‘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업인의 요건 중 하나에서 경영 또는 경작 규모 기준을 두고 있으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는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를 농외소득활동 사업장의 규모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활동인 농작물재배업과 축산업, 임업 활동 외에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의 규모는 그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주된 사업범위의 1/2 이하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 매출액을 법인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등을 적용하며, 현황 및 실태 확인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관련 절차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이 지위를 인정받아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자신의 업종별 매출액을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사업의 비중이 높은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문제(농지소유자격법인제도 상세 운영방식 조사 필요)
 - * 기존의 부대사업들은 농업의 전후방산업임이 명확하여 부대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어느정도 용인되나, 발전업·컨설팅업 등만을 영위 시 농지 소유 불필요
- 농업의 전후방사업만을 영위하도록 제한하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컨설팅, 농기계 제조 등 사업범위 확대 시 농업의 전후방사업 이외의 사업을 법인이 영위할 가능성 존재
- 경영체법상의 사업범위와 타 법상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업과의 불일치 해소 및 법률 간 정합성 확보 필요
 - 간척지활용사업(간척지법), 소금사업(소금사업진흥법), 화물유상운송(화물자동차법) 등에 규정된 사업의 사업범위 포함여부 및 법 규정 방안

2) 주요 검토 대상 관련 현황

가.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 사업

-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의 개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 “농어촌 주택” 또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그 벽면 또는 지붕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에 한정함

「농어촌정비법」
<p>제2조(정의)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농지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p> <p>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p>

「농지법 시행령」
<p>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략</p> <p>③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p> <p>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p> <p>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p>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p> <p>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p> <p>다. 간이퇴비장</p> <p>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농지법 시행규칙」
<p>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1.></p> <p>[전문개정 2009. 11. 27.]</p> <p>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1.></p> <p>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p> <p>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p> <p>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p>

제공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2. 7. 18., 2013. 3. 23., 2014. 4. 3., 2014. 12. 31., 2019. 8. 26.>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2. 7. 18.>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본조신설 2014. 4. 3.]

* 농업인 태양광 지원법 제정안 제2조(정의) 제5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하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농작물 생육에 대한 영향이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정부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향후 경험이 축적된 이후 점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농작물 재배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작물 성장과 함께 태양광 발전을 하는 형태로 농산물과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산업부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업범위를 정하고,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한 규정으로 설계하여야 함

- 다음 [표]는 부대사업범위로서의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과 하부 농지를 이용한 시범사업으로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념 및 특징을 비교한 표임

[표]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개념 및 특징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개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 “농어촌 주택” 또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을 활용하여 그 벽면 또는 지붕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부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
특징	농작물 등에 대한 영향 없이 기존의 영농 시설물의 벽면 또는 지붕을 활용하여 설치함으로써 현재 태양광패널 기술수준 또는 기술 발달에 따라 설치 가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어서 아직 농작물 생육에 대한 영향이나 발전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

나. 스마트팜 기계 및 설비의 제작과 유통

- 스마트팜 관련 사업 발전 현황 및 정책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중임
- 스마트팜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스마트팜 재배 농업기술 및 관련 시설, 기자재, 생육데이터 수집·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시범사업이 필요함
- 다만, 아직까지 스마트팜 기계 및 설비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제조업 분야의 기계 및 설비 제작과 뚜렷이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스마트팜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관련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팜 관련 기계 및 설비의 제작과 유통과 관련한 일정한 정책적 경험이 축적 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다. 교육·컨설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해당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대상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어느 쪽도 교육 및 컨설팅 업무에 대한 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운용에 혼란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체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p>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연계기업”이 경영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에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연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목적사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는 농업법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농업으로서의 기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함

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농업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의 개념)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

-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지역순환경제, 사회 통합 등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범부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회적 경제 정책 범위 설정 및 정책 확대 추진

○ (관련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강병원 의원안)에서 사회적경제 정의, 조직(기업) 범위, 통계 작성, 기금 조성 등 규정(기재위 심사 중(20.8~))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 정의 〉 (윤호중의원 대표 발의)

- ▶ 사회적경제 : 양극화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추진 정책) 사회적경제 관계 부처 TF,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사회적 가치 TF 등의 실질적 정책 조정 및 자문 기능 강화로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 경제조직의 종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예비사회적기업 등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 법인격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4. 설립요건	고용부장관 인증 * 인증기준 : 유급근로자 고용(1명), 취약계층 고용(30%),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등 ◆ 예비사회적 기업 :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정	시도지사 신고 * 기준 :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1인당 총 출자좌수의 30% 초과 불가 ◆ 사회적 협동조합 : 관계부처 장관 인가	행안부 장관 지정 * 기준 : 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	보장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 인정 * 기준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5. 현황	2,559개소 /1,551('20.8.)	16,219개소 /2,139('20.8.)	1,592개소('19.6.)	1,478개소('18.)
6. 지원사업 (법령상 또는 정부재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료 일부 지원(최대 4년, 50인 한도) ◦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최대 3년, 30~60%)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3년, 최대 2.50만원, 2~3명,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비 지원(예비 1천만원,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 *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지원(사업단 구성인원의 자활기업 전환비율에 따라 지원) ◦ 한시적 인건비(수급자·비수급자·전문인력별로 5개월~최대 5년지급) ◦ 사업자금 용자 ◦ 국·공유지 우선임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부담 20~50%) ◦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3년, 1억원, 자부담 10~30%)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최대 2년, 50~70%)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2년, 최대 2.5백만원, 자부담 10~20%) ◦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2년, 5천만원, 자부담 10~3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7.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재산세 25%,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지방소득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	-
	-	◦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8. 법정 적립금	별도 규정 없음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까지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9. 잉여금 배당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후 배당 가능	배당가능 배당금지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표]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⁶⁾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제 3 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행정안전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시작연 도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요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개수 (‘16년말)	1,713개	10,615개	1,377개	1,186개
중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6개		권역별마을기업지원 센터 17개	중앙자활센터 1개 광역자활센터 14개 지역자활센터 249개
지원내용	· (재정) 인건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합정보시스템 · (세제) 법인·소득·지방세 감면, 지정기부금 인정	· (재정) 사업비 · (경영) 교육·홍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합정보시스템, 설립절차 안내	· (재정) 사업비 ·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 (재정) 인건비, 사업비 ·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홍보
2018 예산	1,510억원	43억원	70억원	230억원 (‘17년 자활기금)

6)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9., 14면.

[표] 사회적경제 조직별 관리체계⁷⁾

구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경제 기본법 (강병원의원안 기준)	개별법 및 지침			
			사회적기 업 육성법 (사회적기 업)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지침 (자활기업)	도시재생법/ 마을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마을기업)
목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	사회적경제 체계적 육성	사회적기 업 육성	협동조합 활동촉진	자활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참여자	농업인, 농업법 인(영농조합법 인, 농업회사법 인)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저소득층	지역주민
계획 수립	농어업교육계획	기본계획 (5년, 기재부·시 도)	기본계획 (5년, 고 용부·시 도)	기본계획 (3년, 기재 부)	- (기초생활 보장 기본 계획)	-
	-	시행계획	시행계획	-	-	-
	-	(각부처·시도)	(고용부)	(기본계획 포 함)	-	-
추진 체 계	위원회 농업·농촌및식 품산업정책 심의회 ⁸⁾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	-
	중앙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사회적경제원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중앙 자활센터	-
	광역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16개)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광역 자활센터 (14개)	권역별 지원센터 (17개)
	지자체 심사위 원회	지원센터	지원센터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지역자활센 터 (250개)	-
지 원 수	재정 지원 국가, 지자체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	인건비	-	인건비	-
			사업비	-	사업비	사업비
			사회보험	-	-	-

7)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9., 19면의 <제정안과 현행 개별적 사회적경제기업 영역별 관리체계>의 표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표임

구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경제 기본법 (강병원의원안 기준)	개별법 및 지침			
			사회적기 업 육성법 (사회적기 업)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지침 (자활기업)	도시재생법/ 마을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마을기업)
단			료			
	판로 촉진		세계지원	-	-	-
	국유 재산		권고 (판로지원)	권고 (판로지원)	-	-
	기 타	교육운영지 원)	유·무상 사용 (사회적경제활성 화)	유상사용 (사회적기 업 설립)	-	우선 사용 -
	교육운영지 원)	국민의 권리의무 와 무관한 사무위 탁	경영컨설 팅	설립지원 경영컨설팅	창업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정 보 공 개	운영 공개	통합농업교육 정보시스템 (농 정원), 통합어업교육정 보시스템(수협 중앙회) ¹⁰⁾	적극공개	-	적극	-
	경영 공시	-	의무	-	의무	-

※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가) 사회적 기업

-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항(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

-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설립요건) 인증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부장관 인증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 실현, ④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⑥정관의 필수사항, ⑦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 (지원내용) 4대보험료 일부지원, 추가 고용인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 예비사회적기업 >

- ▶ (개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
- ▶ (종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①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②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음
- ▶ (지정요건) ①조직 형태, ②영업활동 수행, ③사회적 목적 실현, ④정관 구비, ⑤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 ▶ (지원내용) 경영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서비스 지원(최대 70만원, 자부담 30%)
-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 판단(57개소, '20.9.)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 협동조합 개요

-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 (인가) 일반협동조합은 지자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이원화)

*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을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종류 및 현황) ('20.8.)

전체 (개소)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18,458	16,219	81	2,139	19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제한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가능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귀속
감독	관련내용 없음	필요시 관계부처 장부, 서류 검사, 인가조건 위반시 인가 취소

□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 (개념)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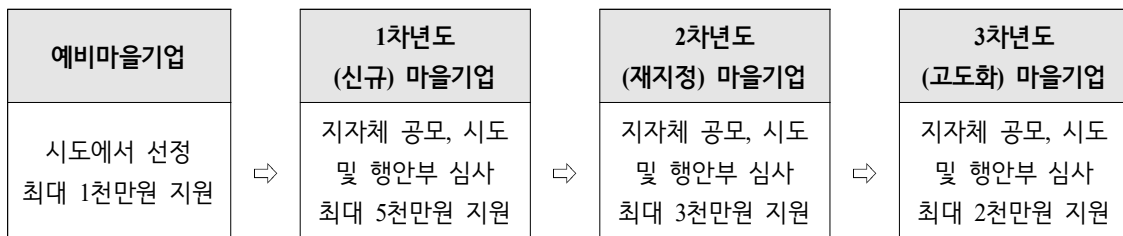
○ (현황) 85개소('20.8월말 기준)

○ (사업범위) 농업 및 농촌 분야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주 사업, 법 제93조의 사업) 하여야 하며,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시행

- (유형) ①지역사업형 :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농촌지역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③취약계층 고용형 : 농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④위탁사업형 :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기타 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마을기업

-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유형) ①관리단계에 따른 유형 : 예비마을기업, 육성형마을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관리형 마을기업
- ② 목적에 따른 유형 : 청년마을기업, 재도약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모두애 마을기업, 新유형마을기업(지역특화형·도시재생형·커뮤니티케어형)
- (운영원칙)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운영원칙과 이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비 지원) 최대 3차에 걸쳐 1억원까지 사업비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립지원) 유통지원센터 구축, 대형마트 입점·온라인 쇼핑몰 판매·판로 지원,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교육·컨설팅, 홍보 지원

< 마을기업 지역별 현황 >

('19.6)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92	96	78	89	56	61	53	44	30	183	122	88	134	110	161	131	120	36

〈 마을기업 법인형태별 현황 〉 (‘19.6)

구분	계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조합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법인	기타
비율	100%	39.6%	26.1%	20.2%	2.3%	3.1%	1.2%	0.6%	4.3%	2.5%

□ 자활기업

- (개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호된 작업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건상 사업자 등록상 1인 이상 사업자를 포함하여야 함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종류) 사회형 자활기업과 자립형 자활기업
 - ① (사회형 자활기업) 일정인원(5인 이상) 확보 및 수급자·차상위자 고용비율요건 지속 충족(전체 구성원의 1/3), 법인격취득 의무화 등
 - 최대 5년간, 신규 채용 수급자 1인당 인건비 50% 지원
 - 자활기금 활용, 사업자금 용자 지원 확대 (2억원 한도, 7년 상환)
 - 우수자활기업 대상 추가 사업비지원 확대(‘18년 16개소, 최대 1억원)
 - 탈수급종사자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및 사업용재산 취·등록세지원
 - ② (자립형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수급자는 1/5이상)

〈 자활기업 일반 현황(‘17년 기준) 〉

- ▶ (유형) 개인사업자 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으로 총 1,092개 기업운영
- ▶ (지원) 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기업에 사업자금 용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 ▶ (업종)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등
- ▶ (매출액) 총 2,399억원(기업당 2.2억원) 수준이나, 3개 전국기업의 매출액 1,615억원(중복집계 825억원)을

제외하면 지역자활기업 1개소당 매출액은 1.3억원 수준

- ▶ (인건비) 합계 1,230억원, 기업당 97백만원 수준, 정부 인건비 지원*은 36억원(3% 미만)
* 한시적 인건비: 자활기업 고용 수급자에 시장형 근로사업단 인건비의 100%(2년), 50%(이후3년) 지급
- ▶ (고용) 고용은 11,02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 차상위·수급자 3,489명 고용 중
* 3개 전국기업이 5,685명 고용 중(중복1936명)임을 감안할 때 기업당 6.9명 고용 수준으로 영세

(나) 사회적 농업

◇ 사회적 농업은 농촌 주민들에게 부족한 서비스(돌봄·교육·일자리)를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활동

- 정의: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활동
- 목적: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통해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 * 개별 농장만의 활동이 아닌, 보건·복지·교육기관, 인근 농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이 필수
- 요건: 사회적 농장은 농업법인 외에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이며*, 사회적 약자는 취약계층** 및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 등 포함
 - * 단, 농업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30% 이상일 것(사업 시행지침) - 농업이 주업인 법인
 -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결혼이민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
- 유형: 사회적 농업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주요 목표에 따라 돌봄·교육·일자리로 구분 가능
 - 돌봄: 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아동 등에 대해 낮 동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
 - * (홍성) 정신장애인들이 농업인들과 허브 재배 및 마을 행사에 참여하여 사회성 향상
 - 교육: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 성인 발달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의 농업 기술과 농촌 정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멘토링 운영

- * (청송) 귀촌 희망 청년 대상 사과재배·농촌생활기술 밀착교육으로 농촌 정착 지원
- 일자리: 노인·장애인 등의 특성에 따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 (영광) 고령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야생화 재배 일자리를 통해 자존감과 소득 증대
- 기대효과: 공익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가능
 -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 도모
- 사회적농업 지원 활성화 사업 개요
- 주요내용: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비용 등 지원
 - * 사회적농장 개소당 연간 최대 6천만원 지원(국비70%, 지방비30% / 최대 5년간)
 - 사회적 농장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여성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등을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 (조직형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사업규모: 2020년 예산 총 25억원, 13개 시·도에서 시행(총 30개소)
- 향후 계획
- 사회적 농장 지원 개소수 확대('20, 30개소 → '22, 70 → '24, 100)
 - * (추진근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4)」

< '20년도 사업대상 현황(30개소) >

소재지		법인명	소재지	법인명	
경기	화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전남	영광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싱싱하우스협동조합		해남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강원	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전남	나주	화탑 영농조합법인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충북	보은	농업회사법인 성원	경북	장성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주)
	제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청송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청주	농업회사법인 (주)다나무와 종이		경산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충남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경남	거창	영농조합법인 수송대발효마을
	공주	농업회사법인 (주)공주 아띠		함양	(주)호미랑 농업회사법인
	청양	농업회사법인 (주)청양푸드		제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전북	무주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세종	세종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완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천	강화
			키울협동조합		강화
	임실	선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대전	유성	(주)손수레
	익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울산	울주	금곡영농조합법인

3) 현행 규정

가.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따라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기에 태양광발전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로 보기 어려움

* 시행령 제11조 1항 6호 ‘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의 의미는 영농과 관련된 사업으로 농업과 관련이 없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은 영위가 불가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관련 사업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 설립된 법인격이므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은 농업과 관련 없는 사업임

- 다음 [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목적 사업의 범위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영농조합법인 목적사업의 범위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 법인 정관례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사업 5.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유의사항 >
	○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농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함 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농작업을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다.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농사·창고·축사·퇴비사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라.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농기계·농기구·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p>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p> <p>마. 농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 자로부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p> <p>바. 농산물의 출하·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지역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함.</p> <p>○ 위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은 적절히 열거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명기할 수 있다.</p> <p>예) 6. 관광농원</p>
--	---

나. 스마트팜 기계 및 설비의 제조와 유통

- 현재 스마트팜의 정의 및 유형, 영농 관련성 등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가 부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범위나 부수적 사업범위에도 스마트팜 관련 사업범위 내용이 부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부수적 사업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과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마트팜 기계 및 설비를 통한 농산물의 재배 등은 아직까지 어느 법에서도 “영농”활동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혁신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아직은 조성단계에 불과하고, 시설재배 및 축사 등 시설에 대한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도시농업 형태의 사무공간 스마트팜이나 가정내 직접 재배방식의 가전형 스마트팜 또는 공장형 스마트팜 등에 대하여서는 뚜렷한 지원정책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취미·여가·학습·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제1항에서도 각 공간에 대한 “활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항 제4호에서도 텃밭용기에 가전형 스마트팜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 4. (생략) <p>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③ ~ ④ (생략)</p>

다. 교육·컨설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서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어업인 교육, 상담, 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연계기업에 사회적 경제조직 내지 사회적 농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에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연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목적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p>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p> <p>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농업

-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됨
- 또한,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③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④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주된 사업범위**가 되고, 같은법 제1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한정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u>사업범위</u>,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u>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p>② (생략)</p> <p>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p>② (생략)</p>

3) 문제점

□ 배경

: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스마트팜 운영 및 관련 기계 제조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대상인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사용,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및 전문컨설팅 수행 등 다양한 사업범위에 대한 요구 등이 있음.

□ 법률 정합성

가.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

-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와 이를 통한 태양력 발전을 업무의 범위로 하는 경우,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내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경우 규모 기준이 달라지게 됨.

*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대상인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의 설치·사용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중, 중분류 '전기업(351)', 세분류 '발전업(3511)', 세세분류 '태양력 발전업(35114)'으로 분류됨.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등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설치면적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1)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전체 구성원의 100분의 80 이상이면서 업무집행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설치규모를 설치면적 기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것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에 한정하여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발전의 범위는,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그 벽면 또는 지붕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에 한정하여야 할 것임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시에도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주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범위 이내의 부대사업으로만 허용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여야 함

나.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 이를 위해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을 활용한 재배 등의 활동이 “영농”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행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법인이 토지 외의 장소나 공간에서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을 활용한 재배 사업을 하더라도 이는 목적사업 범위 내의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도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이 제4호의 “농업기계”에 포함되는지,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에 필요한 자재이 생산 및 공급사업이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인지 불명확한 상황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생략)

- 향후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작물 및 수목과 화초의 재배 행위가 “영농”행위인지와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작물 및 수목과 화초의 재배를 위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내인지,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도와 유통 자체와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도와 유통을 위해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분리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 입법적 불비에 대한 다양한 고려와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경우, 스마트팜 설치를 통한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화훼업/축산업 또는 제조업/가공업 등으로 분류될 것이나, 가금류 내지 육지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증식되는 육류의 제조/가공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따른 사업의 경우, 기존의 분류체계로는 분류가 어려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농업(01) 분야의 작물 재배업(011)과 축산업(012)이 스마트팜의 사업범위에 해당할 것이나, 특히, ‘축산업’의 경우,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우유, 모피, 계란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며, ‘그 외 기타 축산업(01299)’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음.

** 한편, 식료품 제조업(10)의 경우에도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으로 분류되고 있어, 중간 영역의 사업에 대한 산업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스마트팜에서 사용되는 기계 등 장치·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나 가정용 가전형 스마트팜 장치(종자, 배양액, 램프,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경우 등)를 제조/공급/유통/관리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현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경우, 분류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2921)’이나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29250)’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증개업(46101)’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 증개업(46102)’, ‘기계 및 장비 증개업(46106)- 농업용 기계·장비 증개’에도 적용되기 어려움. 도매의 경우에도,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중 ‘종자 및 묘목 도매업(46202)’ 또는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46204)’,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463)’,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1)’, ‘비료 및 농약 도매업(46732)’, ‘의료용품 도매업-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 살충 및 소독제 도매(46442)’ 보다는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46799)’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소매의 경우에는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4719)’ 내지 ‘식료품 소매업(4721)’ 또는 ‘채소, 과일 및 뿌리작물 소매업(47215)’나 ‘그 외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9)’, ‘화초 및 식물 소매업(47851)’로 분류될 것이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762)’ 정도로 분류될 것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효성 확보 및 신고제도 도입 가능성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와 이를 통한 태양력 발전은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에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에 따라 농업법인 사업 범위 내의 태양광 발전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과 비영농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업법인 사업범위 내의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 농업법인 사업범위 인정 및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영농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서는 신고포상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실태조사 외에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교육·컨설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에는 이러한 교육·컨설팅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항 규정 내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인 “연계기업” 정의 규정,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경영 자문 등이 목적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 부분 사업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문 비용 등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된 사업범위 내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수적 사업범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사업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경영 자문 등의 지원사업을 허용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함
-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산업분류 기준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업무범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농업경영체 외에, 농업 관련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농지법」상의 농업경영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대분류(01) 중,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의 업무범위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서비스’(71531)로 대분류 ‘전문 서비스업(71)’ 중 중분류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715)'의 '경영 컨설팅업(71531)'로 분류되고 있음.

*** 컨설팅 외에도 농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및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5699)' 정도로 밖에 포함되지 않게 됨.

**** 농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및 교육과 함께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축산 동식물을 활용한 산책로·체험농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9023)' 이나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로 분류될 것임.

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농업

- 농업법인, 농지 등 농업생산 관련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사회서비스 제공은 농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 경영체법 상 농업법인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 관광·휴양업만 가능하며,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범위)

- 영농조합법인(§11): 농업 경영·부대사업, 농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 공동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업회사법인(§19):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 실제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정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가하려는 농업법인에 정관 변경을 불승인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정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처럼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이 어렵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장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지원으로만 운영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제12조(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들의 영양개선)
제19조의4(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 관련 단체의 출현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함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각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한 각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규정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이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 관련 단체와의 규정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농지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농지법」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농업 관련 업종 분류에 따른 중소기업 내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제들의 각 규정 간 불일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과 제19조제5항에서는 설립등기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등기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5조,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11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거쳐, 같은 법 제19조, 제84조, 제106조, 제115조의10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동일 단체에 대한 설립등기의 시점이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4) 입법례 등

가.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

-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안 중 2018년 11월 2일 발의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이 있으나, 해당 법안에서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농지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 폐기)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이 농촌에서 직접 영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한다.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p>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을 발전시킬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농업인(제2호에 따른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농업인을 말한다) 1인당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읍·면 또는 농촌인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2. 제1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제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농업인(제4조제1항제2호의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승인 받은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은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p>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7.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취소 등)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발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구매 등)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등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발전시설 설치 및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6조(벌칙)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1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p>
--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로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농지법」
<p>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p> <p>1.3. (생략)</p> <p>4.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p> <p>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p>

나.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

-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으며,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안(2020.9.14.)과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안(2020.6.29.)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p>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 농업용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제5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의2. “농업용 지능형 로봇”이란 농림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제5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의2(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다. 교육·컨설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교육·컨설팅을 사업범위로 하는 전문농어업법인의 지정과 활용이 가능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2015. 1. 6.)</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체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p>
--

- 다만, 2020년 11월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지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있을 것 <p>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 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을 지정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의 사업 범위 관련 규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간 법제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농업법인의 교육·건설 등 업무가 사업범위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자격유지 요건으로서의 조건 규정 설계가 필요할 것임. 최근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 등 다양한 입법례에서 이러한 자격유지 요건을 법정화하고 있음
- 다만, 자격유지요건으로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 제도의 절차화가 필요할 것이며, 지정 효력의 갱신 절차 등과도 연계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농업

- 2018년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이 서삼석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제5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까지 상정되었으나, 2019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지되었음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p>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농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사회적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의 인력양성, 재정지원, 교육, 홍보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연구,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시·도별 사회적농업 지원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회적농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제6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조(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 ①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농장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 육성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농업 육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p>2. 농업, 농촌, 복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사회적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사회적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농장(이하 “지정농장”이라 한다)은 지정농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회적농장은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경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농장에 농업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농장에 대하여 사회적농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협력관계 구축비, 취약계층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3조(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판로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농장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석,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농장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제15조(보고 등) ① 지정농장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농장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검토 및 평가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16조(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④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p>
--

<p>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한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2건 발의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의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안과 2020년 7월 14일의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대표 발의안) 제1장 총칙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대표 발의안)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 공동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방안 수립을 통해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이익의 사용 및 배분에 있어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동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p>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p> <p>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p> <p>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마. 윤리적 생산과 유통 바.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p> <p>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u>「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u>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p>	<p>와 국민안전 확보</p> <p>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p> <p>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p> <p>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p> <p>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p> <p>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p> <p>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p> <p>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p> <p>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p> <p>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p> <p>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p> <p>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u>「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u>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 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업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p> <p>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p> <p>5. “사회적경제연대조직”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p>
---	---

제3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p>동사업법인</p> <p>차.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업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p> <p>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p> <p>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p> <p>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p> <p>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사업자</p> <p>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p> <p>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p> <p>나. 제3조제5호의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p> <p>다. 제3조제6호의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p> <p>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p> <p>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p> <p>6.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p> <p>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p>	<p>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p> <p>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p> <p>나. 제3조제4호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p> <p>다. 제3조제5호의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p> <p>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p> <p>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마련과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p> <p>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의</p>
---	--

<p>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p> <p>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육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재정지원, 판로확대, 공공조달의 확대, 연구개발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p>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p> <p>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육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10.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1.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2.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관료·연구개발·조달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7.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1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p> <p>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련단위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사회적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p>
---	--

제3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p>사항</p> <p>1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p> <p>13.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방안</p> <p>1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 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별 공무원과 학생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교육 사항 11.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역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p>	<p>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별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사항 11.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p> <p>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기준과 운영방안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p> <p>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p>
--	---

<p>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년도 시·도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⑥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p> <p>②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제8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p> <p>제10조(국회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은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 등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p> <p>제11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 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직 간, 분야 간, 영역 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 	<p>1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적경제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추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적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 5. 시도별 사회적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지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산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의 협력 추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대학·재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p> <p>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p> <p>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p> <p>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p> <p>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p> <p>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p> <p>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사항
---	---

제3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p>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조직간, 분야간, 영역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협의회회의 대표자 또는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3.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정당에서 추천한 각각의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4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지역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5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p> <p>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7조(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가통계의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p> <p>제18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p> <p>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둔다.</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⑧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⑨ 정부는 위원회의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다.</p> <p>⑩ 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p> <p>⑪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구성·운영·예산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등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을 넘도록 한다.</p> <p>③ 실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사회적경제 민간단체등의 실무책임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 실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p> <p>④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명 <p>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p> <p>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p>
--	---

제3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p>트위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p> <p>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9. 사회적가치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 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교육 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하목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p>⑤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p>	<p>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p> <p>⑧ 그 밖의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등의 구성·운영·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9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p> <p>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1조(사회적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p> <p>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p> <p>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자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p> <p>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 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	---

<p>4항제7호 및 제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p>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p> <p>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을 운영·감독한다.</p> <p>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⑩ 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⑪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⑫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⑬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간 균형있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9.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제3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p>⑤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조성등 자조적인 사회적금융 조성사업 8.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9.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p>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p> <p>⑦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p> <p>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p> <p>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⑪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경제조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원 별설로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⑫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⑬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 원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권역별 지원센터의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
---	--

<p>4. 그 밖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p> <p>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사업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역별 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 지원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 지원센터 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p>	<p>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p> <p>②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정부는 경제원의 사업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권역별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지원센터 등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지원센터”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제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p> <p>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등 신탁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 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p>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p> <p>④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p>
---	---

<p>사는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 지원 센터를 공동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⑤ 시·도 지원센터의 지정,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평가 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지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사회적금융의 활성화</p> <p>제22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지원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p>제23조(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투·융자 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융자사업 <p>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p>	<p>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등이 출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융자, 온렌딩, 융자사업 위탁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p>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p>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제30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p> <p>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p>
---	--

<p>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이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⑥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민간투자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다.</p> <p>②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립·설립할 수 있다.</p> <p>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p> <p>제25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제26조(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7조(교육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8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p>	<p>사가 운영·관리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식에 따라 각각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p> <p>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p> <p>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⑥ 시·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p> <p>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민간기금은 제28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p> <p>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p> <p>제33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⑤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 규모와 절차등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p> <p>제34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p>
--	---

<p>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 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p> <p>제2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 및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1조(사회적경제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p> <p>제3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사회적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사회적성과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p> <p>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p>제37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 5.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제교육단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과 단체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중·고 학생 및 청년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8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p>
--	--

<p>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 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3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4조(벌칙) 제1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5조(과태료) ① 제19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제원의 설립 및 경과조치) ① 기획재정부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경제원 설립위</p>	<p>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p> <p>제3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등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등 <p>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③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간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간에 지역, 업종, 부문, 분야, 전국단위 연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p> <p>④ 제3조제3호바목에서 과목까지의 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p> <p>제4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1조(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역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혁신 창업보육센터 설치등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창업과 혁신적인 창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 및 시설지원, 활동비의 보조, 기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층의 정책적·사업적 지식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청년층의 사회적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설립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경제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설립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7항에 따라 임명된 경제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⑥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p> <p>⑦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경제원의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⑧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동시에 경제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경제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p> <p>⑨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⑩ 경제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p> <p>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p> <p>제20조를 삭제한다.</p> <p>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p> <p>제4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4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제4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5조(국회보고 등)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 국가전략과 기본계획등을 수립·심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및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지역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및 추진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국회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제도·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p>제46조(벌칙)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7조(과태료) 제23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	--

제3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p>1.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p> <p>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p> <p>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p> <p>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p> <p>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p> <p>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p> <p>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p> <p>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p> <p>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p> <p>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p> <p>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p> <p>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5조의11(자활촉진사업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p> <p>2. 그 밖에 자활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 제목 “(전담조직의 설치)”를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 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제원의 설립 및 경과조치) ① 기획재정부는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경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p> <p>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 제23조에 따른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경제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경제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p> <p>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한다.</p> <p>⑥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p> <p>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p> <p>제20조를 삭제한다.</p> <p>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p> <p>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p> <p>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p> <p>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p> <p>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p> <p>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p> <p>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p> <p>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p> <p>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p> <p>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p> <p>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p> <p>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 제목 “(전담조직의 설치)”를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 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3조에</p>
--	---

<p>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p>	<p>다른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p>
--	--

- 기타 분야 사업범위 확대가능성 검토

- 사업범위 확대가능성 판단 사례: 농업법인의 숙박업 관련 규정

「농어촌 정비법」
<p>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p>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p>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p>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p>

<p>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2. 6. 1.></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 2013. 3. 23.></p> <p>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1. 3. 29., 2013. 3. 23.></p>

· 사업범위 확대가능성 판단 사례: 농업법인의 공판장 관련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5.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p>②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8. 22.]</p>

· 사업범위 확대가능성 판단 사례: 농업법인의 화물자동차 운수 관련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신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p>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p>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배형 화물자동차로 한다.</p> <p>[전문개정 2010. 12. 29.]</p>
<p>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0. 12. 29.]</p>

· 사업범위 확대가능성 판단 사례: 농업법인의 농업SW 연구개발 관련 규정

* 농업법인의 농업SW 연구개발의 농업법인 사업범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스마트팜 재배기술 및 농업관련 SW의 연구·개발이 선도적 농업인을 중심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대부분의 정보통신 내지 SW, 벤처 관련 법령에서는 SW개발에 필요한 일정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설비, 실적 등을 지원 요건 내지 자격유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의 SW 연구개발 및 관련 교육·컨설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하여 서도 보고의무 및 자격요건의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현황 및 실태를 조사·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p>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p>

<p>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p> <p>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③ 삭제 <2015. 6. 22.></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전문개정 2012. 5. 23.]</p>
--

<p>「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p>
<p>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및 영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p> <p>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3.]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1. 삭제 <2012. 11. 23.>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삭제 <2012. 11. 23.>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④ 법 제24조의3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1. 23.>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3.>

[본조신설 2008. 9. 3.]

(3)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관련 고려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근거하여 검토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농업법인 사업범위 관련 인정가능성 검토 및 고려사항

구분	대상	사업범위 확대 가능성	근거 법령	추진 상황 및 고려사항
사업 범위	교육·컨설팅·연구개발	- 교육 및 컨설팅을 하기 위해 농업법인 중 장관이 전문경영체로 지정하여 활용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
주요 검토 대상		- 농업법인이 정관에 귀농·귀촌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고, 상담 컨설팅 업무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업법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농업법인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적인 활용이 가능

제 3 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p>무 수행경험 인력을 3명이 상 보유하며 교육시설을 갖춘 경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음</p>	<p>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p>	<p>합 - 스마트팜 및 농업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 SW개발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고있으므로, 선도 농업인 등의 활용을 위한 농업법인 허용 검토 필요 - 단,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음</p>
	<p>사회적 농업</p>	<p>-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내지, 지역 사회 기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p>	<p>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제3호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농어촌관광휴양사업)</p>	<p>-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 -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윤호중, 강병원 의원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동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서비스(돌봄, 교육, 일자리, 장학, 지역 사회공헌 등)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체험 및 관련 음식점 운영의 경우, 도농교류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해당 법령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농업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p>
	<p>스마트팜 원재료 및 자재 설비</p>	<p>- 스마트팜 설비 및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계 및 자재 등의 생산과 공급, 유통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다만, 농기계 및 스마트팜 설비(설치 및 공사 제외) 제조는 제조업적 성격이 강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스마트팜 관련 기계와 설비의 제조를 부대사업범위로 허용할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경</p>	<p>- 근거 불명확</p>	<p>- 제한적 허용, 단, 경험적 기준 축적과정 필요 - 타 산업에 주로 사용되면서 농업에도 사용되는 기계(단순 부품 제외/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별표1,2,3,5 참고)와 스마트팜 설비에 필요한 기계의 제조 사업이 일반 기계 제조와 구분이 어려운 상황임 - 아직 농업기계 및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제조를 일시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로 허용하기에는 일반 제조업과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 향후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 벨리” 추진 및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p>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p>협적 기준 축적 및 정립 과정이 필요함</p>		<p>관련성 및 스마트팜 필수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시설물 활용형태양광발전에 대하여 제한적 허용 - 영농시설물 활용형태양광발전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확인된 경우 내지 영농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농지법 및 농업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으므로 농업 관련성에 국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계약에 의한 설치 등은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유희공간의 범위 및 지정방식을 시행규칙·고시 등에 정하고, 지정된 유희공간을 준수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 및 신고제도의 채택이 필요함 <p>*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시설물을 구축하고, 옥상·벽면 등을 활용하여 발전시설만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할 방안 마련 필요</p>
<p>기타 검토 대상 사업</p>	<p>간척지 활용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이 간척지를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시설 단지 또는 말산업 관련 시설(말산업육성법)이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용도로 활용사업을 하는 것이 해당 법령에 따라 인정되며, 조성토지 등에 대한 매입신청 또는 임대신청도 가능함 - 간척지법 제11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의 80% 이상인 농업법인을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허용 -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별도의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규제하고,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업무범위 등으로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제 3 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공판장 운영	농업법인 등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자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 허용 가능
동물실험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2호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동물 실험시행기관의 범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허용, 단 관련 법령 준수 등에 관한 보고의무 부과 및 실태조사 강화 -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산자단체 내지 농업법인이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짐 - 따라서,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사항 보고의무 대상 농업법인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소금사업 관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해수부 업무 위탁	-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농어업경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 추가 논의 및 해수부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필요 - 소금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법률의 내용은 천일염, 염전 등 해수부 관련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수부와 영어조합법인과 관련성이 크며, 농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익 및 위탁범위 등에 대하여서는 실무적으로 농림부와 해수부간 업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화물운송	-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사유)	- 기존과 같이 예외적 범위에서만 인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및 같은법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제3호에서 정한 취지는 예외적인 유상운송 허가 사유임 -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상운송 허가사유에 근거한 사업범위로서의 인정은 무리한 해석일 것으로 판단됨

종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넓혀가되, 기준 설정 등에 일정한 경험 축적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통하여 관련 기준 등을 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지법 등의 농업 관련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범위 인정을 위한 농업 관련성 및 매출액 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경계가 모호한 영역 또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서는 보고의무 부과 및 실태조사 강화, 법규 준수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 개선 방향

-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이나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유통, 교육·컨설팅업, 사회적농업 등 사업범위 확대가능성에 따라 세제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
- 확대되는 사업이 농업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부가적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매출액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농업환경 변화나 타법 개정 등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향후 농림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의 경험이 축적 되는대로 관련 결과를 반영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부대사업의 규모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또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에 따른 ‘농업인의 기준’이나 ‘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 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는 농외소득활동 사업장의 규모를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농작물재배업과 축산업, 임업 활동 외에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의 규모는 주된 사업범위의 1/2 이하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또한, 이러한 부대사업 농외소득활동 종사자 수나 사업장 면적 등의 기준 외에도 농업법인의 출자금 및 부대사업 수익규모, 보조금 수령 규모 등에 따라서 해당 농업법인의 경영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관리와 제도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p>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p>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p>「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p>「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

가.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

-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농지법」 상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기존에 농지에 설치되어 운용하던 태양광 발전은 모두 불법행위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다만, 최근 태양광 패널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어 시설물의 벽면이나 지붕을 활용한 패널 설치가 가능하므로, 영농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태양광 발전은 허용 범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농업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농업법인의 부대사업범위로서의 영농

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은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비영농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농지 또는 농지임대 내지 농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과 이에 따른 '사용승락'에 의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경우는 경자유전 원칙에 반하는 농지법 규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 및 유통은 기계 및 설비의 제조나 유통에 대한 내용으로써, 일종의 제조업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에 관련된 농업법인의 부수적 사업범위를 인정하는 경우,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적합할 것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내지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를 통하여서도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시행할 능력과 기술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개정을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도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교육 컨설팅(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내지 사회적기업 연계기업)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제도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므로, 2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 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항 규정 내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인 “연계기업” 정의 규정,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경영 자문 등이 목적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 부분 사업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문 비용 등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p>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p>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p>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된 사업범위 내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수적 사업범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사업에 대하여 서도 일정한 경영 자문 등의 지원사업을 허용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함

라.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농업(사회적 가치추구 실현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사업범위 내지 부수적사업범위에 ‘사회적 가치 추구·실현’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농업법인의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와의 관련성을 살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표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간 주요 내용 비교¹¹⁾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목적	○사회적 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 (제1조)	○사회적경제의 공통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제1조)
정의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제1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공동의 공동이익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제3조제1호)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 신장,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평등한 고용기회, 국민 건강의 증진, 지역공동체 재생,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가치(제3조제2호)

11)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9., 6~10면.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사회적경제조직	포괄하는 가치(제3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제3조제3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제3조제4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제3조제5호)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제3조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문화사업자 등(제3조제3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제3조제5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제3조제6호)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 (제3조제4호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용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제3조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용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제3조제7호)
국가 등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등을 마련해야 함(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원칙 등과 맞게 하며, 이 법 발효 후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함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상향식, 5년, 정부)(제8조) ○부문별 발전계획안/시행계획 (5년/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5년/1년, 시·도지사) (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조정(제11조),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제12조), 지역발전 시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상향식, 5년, 기재부장관)(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7조)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5년/1년, 시·도지사) (제8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9조)

제 3 장 농업법인 목적 사업범위 조정 및 체계정합성 확보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추진(제1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4조)	
사회적 경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제15조·제16조·제17조)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중 1인)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및 전문위원 (위원회에 설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제18조) ○협의 및 조정(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20조), 자료제출 요구권(제44조), 국회 및 시·도의회 보고(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제11조·제12조)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추천 1인)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 (위원회에 설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제14조) ○협의 및 조정(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16조), 자료제출 요구권(제13조),
사회적 경제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분야를 국가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 (제17조)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18조)
사회적 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적경제원(기재부 운영·감독 총괄, 고용부·행자부 협력) (제23조)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확대 개편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제46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적경제원(기재부 소속) (제19조)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제19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제19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재부 지정, 시·도 단위)(제24조)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자체 설치, 시·도 단위)(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재부 지정, 시·도 단위)(제20조)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자체 설치, 시·도 단위)(제21조) -권역별 센터와 지역별 센터는 공동 지정 가능
기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 (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 -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금,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등 - 용도: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운영 및 금융 지원, 사회적 경제 자본시장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강병원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관리: 기재부,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기금 설치 가능(지자체)(제28조) ○민간기금 설치 가능(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금융기관)(제26조·제27조·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출자 가능(제24조)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제33조) ○사회적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 (제34조)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공유·국공유재산 등을 임대(제35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시 세제 상 감액 또는 면제 혜택 가능(제36조) ○설립·운영의 전문인력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고, 조직 경영컨설팅을 지원해야하며, 시민 등에 대한 사회적 경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제25조) ○국공유재산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행정적 지원이 가능(제26조) ○설립·운영의 전문인력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제27조)
민간참여·국제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제38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제39조) ○국제협력 등(제40조)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 및 참여 증진(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참여(제28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제29조) ○국제협력 등(제30조)
공개·공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공시의무(제42조·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공시의무(제32조·제33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음 (부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음 (부칙 제3조) ○사회적경제의 날 지정(제31조)

- 2건의 법안에서는 모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상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간 규정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사회적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내지 부수적 사업 범위로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 4 장 농업법인 관리를 위한 수시 점검 체계 강화 방안

제1절 후속조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매뉴얼 보완

1.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관련법상 조치 현황

위반 및 관련 사항	조치	근거법령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 시정명령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조2 ⑤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이 되지 1년 경과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사업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 해산명령청구 (지자체 → 법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조3 ①, ② 상법 §176 ①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최대 300만원) 실태조사 불응(최대 300만원) * 농지소유 여부 거짓 응답 포함 설립통지, 변경통지 미이행(최대 100만원) * 단, '15년 7.7. 이후 설립·변경등기한 법인에 한함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최대 100만원)	▶ 과태료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 §33 ①, ②
5년간 등기사항 미변동시 관보 공고	▶ 해산간주	상법 §520조의2 ① 상업등기법 §73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0이상 농업인) 위반 후 3개월 경과 * 미이행시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처분명령 (지자체 → 법인)	농지법 §10 ① 농지법 §11 ① 농지법 §62 ①

제2절 법인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후속조치 내역 및 결과 공지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1) 현행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별칙, 양벌규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이러한 이력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 등의 정보제공이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2) 문제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별칙, 양벌규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이러한 이력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목적외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악용 사례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곤 함
-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상 공표를 통하여 행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성명이나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실효성 확보 차원의 공표)
- 행정상 공표는 행정절차의 일부로서 작용하도록 하여 제재적 성격이 없는 순수한 정보제공(위반사실의 공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음(정보제공적 공표)
- 다만,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에 관한 부차적인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이는 향후 전개될 행정에 대한 법적 예측성을 부여하는 행위임
- 또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음(유도적 공표). 어떤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음

2. 입법례 등

○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공표(제재적 공표)

「공직자윤리법」
<p>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바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p>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국세기본법」
<p>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식품위생법」
<p>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 정보제공적 공표

「행정절차법」
<p>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p>

<p>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당사자들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

<p>「행정규제기본법」</p>
<p>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3. 개선 방향

- 일정한 경우 운영현황 보고 및 검사 등의 의무를 적용하고, 제3자의 신고가 있거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농업법인의 설립 및 경영 활동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농업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업무상황이나 장부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보고 및 검사를 통하여 법규 위반행위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서는 영업정지명령이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 및 검사에 따른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확인 검사 및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및 검사를 통하여 행정처분 결과가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선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 5 장 농업법인 관리체계화를 위한 법제 도입 방안

○ 농업법인 관리단계별 개선방향 및 사업범위 조정, 수시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정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제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목적	유형	개선방향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	설립	○ 농업법인의 설립 전 사전심사 요건의 채택 및 사전신고제 도입 - 설립요건, 사업범위 적정성 등에 대한 지자체 사전 검토(등록) 후 법원에 설립등기함으로써 농업법인 성립
	운영	○ 농업법인 모니터링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농지보유·보조금 수혜 법인에 사업 운영 현황 보고 및 경영공시 의무 부과 ○ 농업법인의 비정상 운영 방지 : 「재정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수령 후 목적 외 사업 영위 시 보조금 환수 규정 마련
	출자·조직 변경	○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전환시 요건 강화 ○ 방치된 법인을 이용한 범죄 방지 - 현물출자 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조직변경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신설
	해산	○ 방치된 장기 미운영 법인의 정비를 위한 해산 간주규정 채택
	관리·감독	○ 법인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제도 도입 - 현행 3년 주기 전수조사에서 1년 주기 비율조사로 개편
사업범위 조정	목적 사업	○ 농업 목적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 및 법령 간 정합성 확보
수시점검 체계	후속조치 매뉴얼	○ 후속조치 시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취합하여 매뉴얼 보완
	법인관리시 스템	○ 지자체의 후속조치 내역과 결과를 기재하도록 시스템 개선

제1절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

1. 설립 전 사전심사 및 사전신고제 도입

○ 설립 전 사전심사 및 사전등록제 도입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의2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략)
<p>제16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⑧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

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과 출자, 사업범 위, 정관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1. 합명회사
- 2. 합자회사
- 2의2. 유한책임회사
- 3. 유한회사
- 4. 주식회사

- ② ~ ⑨ (생략)

⑩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 생략 -

제18조의3(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영농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 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제16조3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 여야 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정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거쳐야 하고,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 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9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 ⑧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
- ⑩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농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2. 운영·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 정상화 제고 방안

(1)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사업 운영 현황 보고 의무

- 사업 운영 현황 보고 의무 도입 규정 개정안(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보조금 수급 법인 등이 적용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의4(운영의 공개) ①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농업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농지의 소유현황과 농지 관련 사용·수익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농업법인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p>② 농업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소재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0조의4(운영의 공개 등) ① 법 제20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내지 소유농지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2.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20조의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농업법인 3. 최근 5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농업법인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법인 <p>② 법 제2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은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p>

(2)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 경영공시 의무 도입 규정 개정안(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보조금 수급 법인 등이 적용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5(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은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농업법인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4.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수령 내역 및 제7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의 사실 5. 농지의 소유현황과 농지 관련 사용·수익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위한 자료의 등록과 변경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농업법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농업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법인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 농업법인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전문기관이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⑥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3. 출자·조직 변경 요건 강화

(1) 주식회사 전환시 요건 강화 및 법원의 인가절차 도입

○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p>② ~ ⑨ (생략)</p> <p>⑩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p>

(2) 현물출자시 요건 강화

○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8조의3(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② 영농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제16조3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정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거쳐야 하고,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p> <p>③ (생략)</p> <p>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16조의3 제6항에 따라 법원에 보고한 공정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 또는 감정결과와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총출자액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p> <p>② (생략)</p>

4. 해산 간주 규정 도입

○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의9(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p> <p>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p>

<p>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p> <p>3. 제16조 제5항 또는 제16조의2 제8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p> <p>4. 제19조 제6항 또는 제19조의2 제9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p> <p>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6. 제20조의7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해산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0조의10(휴면 법인의 해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업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농업법인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농업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농업법인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또는 사원이나 주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사원이나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p> <p>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농업법인이 제4항에 따라 농업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p> <p>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0 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0제5항"으로 본다.</p>

5. 행정조치 실행력 확보 방안

(1) 목적 외 사업 농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제도 도입과 공표

○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의8(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이 5명 미만인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3. 제16조의2 제8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4. 제19조의2 제1항과 제9항에 따른 사업범위나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6. 제20조의7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의2 제1항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2 제1항의 사실, 제20조의7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대체과징금의 처분 사실, 제20조의9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처벌사실,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농업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목적범위 외 사업 영위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 도입 및 공표

○ 규정 개정안

- 제1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방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p>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0조의2(목적외 사업 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16조의2와 제19조의2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농업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p> <p>제33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의2 제1항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2 제1항의 사실, 제20조의7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대체과징금의 처분 사실, 제20조의9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처벌사실,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농업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제2안 :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포함하는 방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
<p>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p> <p>제86조의2(목적외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급한 농업법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목적 외의 사업을 영위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p> <p>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p>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

<p>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p> <p>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p>
--

(3) 목적 외 사업영위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8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의 수급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목적외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발급받은 경우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의2 제1항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2 제1항의 사실, 제20조의7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대체과징금의 처분 사실, 제20조의9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처벌사실,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농업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4) 실태조사 개편 방안

○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의3(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부대사업 범위를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번호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사원 및 주주현황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p>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제1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식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0조의2(시정기간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3년주기 비율조사를 말한다. 3년주기 비율조사방식은 농림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3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4조의2(실태조사 등) 영 제20조의3 제1항에서 농림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지막 전수조사 결과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분류된 각 법인에 대하여서는 3개 분야로 나누어 3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1/3씩 1년주기 비율조사를 실시한다. 2. 새로 설립된 신규법인에 대하여서는 설립 다음 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년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제2안] 시행령 및 [실태조사 실시요령]에 규정하는 방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0조의2(시정기간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매년 일정 비율을 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조사방식 및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3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요령」
<p>1. 실태조사 근거 및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20조의2 제1항에서 농림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마지막 전수조사 결과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분류된 각 법인에 대하여서는 3개 분야로 나누어 3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매년 1/3씩 3년주기 비율조사를 실시한다. (2) 전년도 실태조사 이후 설립된 신규법인에 대하여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년 비율조사를 실시하는 3개 분야의 하나로 편입한다.

제2절 사업범위 조정 및 수시점검 체계 구축

1. 목적사업의 범위 확대

○ 규정 개정안

- 법률 제16조와 제19조는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사업범위 내지 부대사업범위 확대하여 규정 보완
- 선도적 농업 활동 제고를 위하여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농업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사업과의 활동 비중을 제한하여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p>

<p>한다. 설립신고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과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p> <p>③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⑥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p> <p>⑩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부대사업에 사용하는 농지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6.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발전사업
 7. 스마트팜 기계 및 시설의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사업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생략)
- ③ 제1항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규정 예시: 영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규모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된 사업범위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시점검 체계 구축

(1) 후속조치의 실행력 확보 및 매뉴얼 보완 절차 체계화

○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설립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설립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의2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절차에 적합하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2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의 구성 및 출자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업법인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부대사업 범위를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p>

<p>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번호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사원 및 주주현황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2) 지자체 후속조치 내역 관리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규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8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의 수급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목적외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발급받은 경우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2(목적외 사업 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16조의2와 제19조의2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농업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p> <p>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설립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설립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의2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절차에 적합하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2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의 구성 및 출자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업법인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p>

<p>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부대사업 범위를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번호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사원 및 주주현황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0조의7(시정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농업법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농업법인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8(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3. 제16조의2 제8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4. 제19조의2 제1항과 제9항에 따른 사업범위나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6. 제20조의7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9(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6조 제5항 또는 제16조의2 제8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4. 제19조 제6항 또는 제19조의2 제9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7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해산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 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6조 제5항 및 제19조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어업법인
 5. 제16조의2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업법인
 6. 제20조의5에 따른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
 7. 제20조의6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참고문헌

- 강현철,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활성화 및 휴면협동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기획재정부, 2017.6.
- 김현희,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11.
- 왕승혜·송재일·금태환, [농업현대화를 위한 국제농업규범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6.
- 나채준,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2017.9.
- 한정미,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김은정,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 경영구조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산림청, 2018.12.
-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연구리뷰] 제4권 제3호, 융합연구정책센터, 2018.3.
- 장영주·김태우,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9.12.
- 참고 인터넷사이트: www.law.go.kr (법제처 법령검색 사이트)

부 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20. 12.

한국법제연구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 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략)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의2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략) 	
	<p>제8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의 수급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목적외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발급받은 경우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p>	<p>- 개정안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농업법인의 비정상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 현황 보고, 경영공시, 해산간주 규정 등 다양한 조치를 채택함</p>

	<p>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사업범위 내의 영농시설물 활용형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향후 농업법인 사업범위 인정 및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영농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서는 신고포상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실태조사 외에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p>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p> <p>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p>	<p>제16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삭제</p> <p>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③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 제1항의 농업조합법인 내용을 삭제함 - 제16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과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의 설립)로 규정을 분리함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 제도 채택에 따라 설립신고 및 신고확인증 발급, 설립등기의 절차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의 설립)를 신설함

<p>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p> <p>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p> <p>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p>	<p>한다.</p> <p>④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p> <p>⑧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p>	
---	---	--

<p>(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p> <p>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p> <p>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2015. 1. 6., 2017. 3. 21.></p> <p>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p>	<p>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p>	<p>-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p>

	<p>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p>	<p>장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p> <p>-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신고확인증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발급하도록 함</p>
--	---	--

	<p>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u>2분의 1 이상</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의 <u>설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과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신고 주체 단순화 및 상세 신고요건 및 절차 규정은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함: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p>
	<p>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p>	<p>-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라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p>

	<p>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p> <p>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p> <p>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 1. 6.></p> <p>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p> <p>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p>	<p>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 생략 -</p>	<p>-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9. 8. 27.></p> <p>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 6.></p> <p>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 1. 6.></p>		
<p>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p> <p>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p>② ~ ⑨ (생략)</p>	<p>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p>② ~ ⑨ (생략)</p> <p>⑩ 제1항에 따라 <u>영농조합법인이 제1항 제4호</u></p>	<p>-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형태로의 조직변경 시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함</p>

	<p><u>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u>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p>	
<p>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u>제17조</u>를,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u>제18조</u>를 준용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p>	<p>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 생략 -</p>	<p>- 현행과 같음</p>

농업법인 제도 정비 및 관리 체계화 연구

<p>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 6.]</p>		
	<p>제18조의3(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② 영농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제16조3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정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거쳐야 하고,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p>	<p>-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라 설립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을 첨부하도록 함. 변경등기신청서의 경우에도 동일함</p>

	<p>여야 한다.</p> <p>⑥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p>	
<p>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p> <p>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p> <p>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p> <p>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p> <p>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p>	<p>제19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p> <p>⑤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p>	<p>-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설립 근거규정을 분리함</p>

<p>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p> <p>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p> <p>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p> <p>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야 한다.</p> <p>⑥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p> <p>⑧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p>	<p>-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함</p> <p>-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p>

	<p>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p> <p>③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p>	<p>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p> <p>-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신고확인증을 법 제19조의3에 따라 발급하도록 함</p>
--	--	--

	<p>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⑥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p> <p>⑩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통보의 방법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농업법인 통합시스템이 구축시, 등재만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p> <p>- 대통령령에서 절차 및 방법 규정: 출자비율을 준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p>
--	--	--

	<p>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라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p>
	<p>제19조의4(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② 농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라 설립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함. 변경등기신청서의 경우에도 동일함</p> <p>-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p>

	<p>⑤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p>	<p>*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4. 설립신고 연월일 5.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p>*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2. 출자감소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의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p>	<p>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p>	<p>- 현행과 같음</p>

<p>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0조의2(목적외 사업 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16조의2와 제19조의2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농업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p>	<p>- 목적외 사업을 금지하는 한편, 목적외 사업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목적외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법인 관리의 체계화 및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p>
<p>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p>	<p>제20조의3(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p>	<p>- 조문 위치 조정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p>

<p>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p><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이 제1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부대사업 범위를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u>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u></p>	
--	--	--

<p>하게 하는 행위</p>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u>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u></p> <p><u>1. 사업자등록번호</u></p> <p><u>2. 매출액</u></p> <p><u>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u></p> <p><u>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u></p> <p><u>5. 자산총액</u></p> <p><u>6. 사원 및 주주현황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u></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p> <p>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p>	<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경영체 실태조사의 실효성 및 정확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과제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p> <p>-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함</p>
---	---	--

<p>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p> <p>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p>	<p>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p> <p>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p> <p>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	--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20조의4(운영의 공개) ①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농업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u>농지의 소유현황과 농지 관련 사용·수익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5. 그 밖에 농업법인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p>-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모든 농업법인에 대하여 운영의 공개를 하도록 원칙 규정을 도입함</p>

	<p>② 농업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소재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20조5(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은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규약 등 농업법인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4.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수령 내역 및 제7조의 2에 따른 부기등기의 사실 5. 농지의 소유현황과 농지 관련 사용·수익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등록과 변경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농업법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농업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법인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p>	<p>-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관 규약, 의사록, 사업결산 보고서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 외에도, 관리 체계화 및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령 내역 및 농지소유현황과 농지 관련 사용·수익 현황 등 중요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p>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 농업법인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전문기관이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⑥ 농업법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설립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설립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상황·</p>	<p>- 농업법인의 사전 설립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실태조사, 적법 운영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일정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p>

	<p>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제16조의2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2. 제2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의 구성 및 출자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3.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4. 농업법인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5.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p>	
--	--	--

	<p>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부대사업 범위를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번호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p>시정명령은 조문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함</p> <p>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 및 정확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p>
--	--	---

	<p>5. 자산총액</p> <p>6. 사원 및 주주현황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현황</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 신설 -</p>	<p>20조의7(시정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농업법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농업법인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나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통합하여 규정함</p> <p>-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농업법인의 법규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시행령에서 시정명령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p>
	<p>20조의8(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3. 제16조의2 제8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4. 제19조의2 제1항과 제9항에 따른 사업범위나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p>- 해산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외에도 실태조사의 실효성 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p>

	<p>농업회사법인</p> <p>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p> <p>6. 제20조의7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u>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u> 농업법인</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u> 농업법인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영업정지 처분을</u> 갈음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20조의9(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p>- 현행 규정 수준에서 시정명령 관련 조문번호 변경 및 해산명령 관련 비용 지원 근거 마련</p>

<p>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p> <p>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p> <p>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p> <p>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p> <p>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본조신설 2015. 1. 6.]</p>	<p>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p> <p>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p> <p>3. 제16조 제5항 또는 제16조의2 제8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p> <p>4. 제19조 제6항 또는 제19조의2 제9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p> <p>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6. <u>제20조의7</u>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해산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p>	
--	---	--

	<p>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의10(휴면 법인의 해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업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농업법인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농업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농업법인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또는 사원이나 주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사원이</p>	<p>- 장기 미운영 법인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상법」 제520조의2와 같이 휴면법인 해산 간주 규정을 채택함</p> <p>-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법원행정처장에게 휴면 농업법인에 대한 영업계속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	--	--

	<p>나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p> <p>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농업법인이 제4항에 따라 농업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p> <p>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0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0제5항으로 본다.</p>	
<p>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 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 농업법인 관리 체계 확보 및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제16조의2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업법인 또는 제20조의5에 따른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 제20조의6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채택함</p>

<p>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4. 제16조 제5항 및 제19조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어업법인</p> <p>5. 제16조의2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업법인</p> <p>6. 제20조의5에 따른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p> <p>7. 제20조의6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1. 6.></p> <p>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0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2. 제20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p>	

<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1. 6.></p> <p>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p> <p>2.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p>	<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p> <p>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p> <p>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p>	
	<p>제33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의2 제1항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2 제1항의 사실, <u>제20조의7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제20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대체과징금의 처분 사실, 제20조의9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u>,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처벌사실,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농업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p>	<p>-- 농업법인 관리 체계 확보 및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사실과 처분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p>

	<p>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